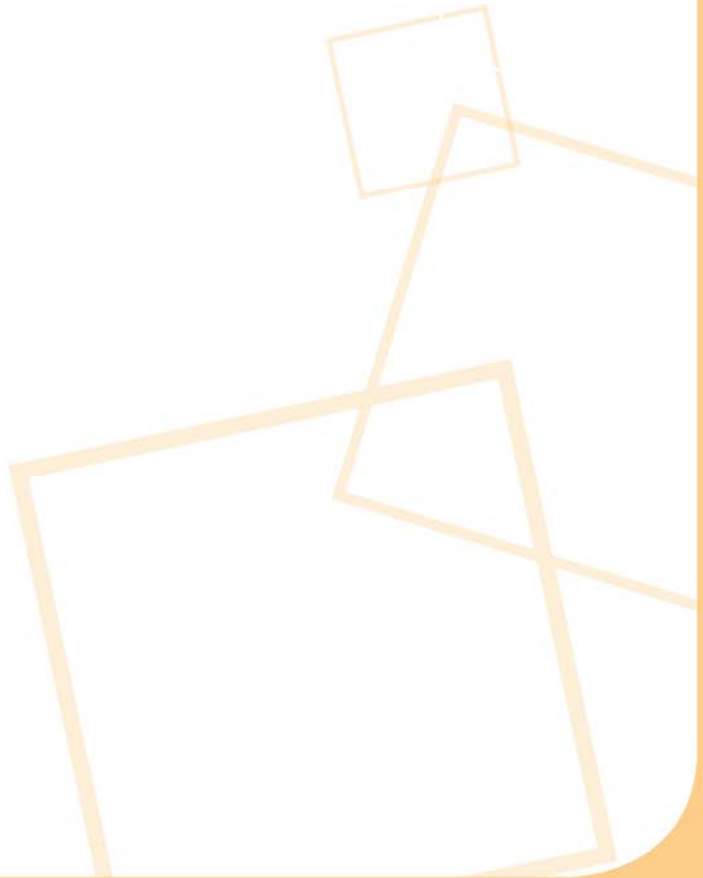




# 제1장 정정보도 사례





## 제1장 정정보도 사례

### ▶ 사례1

유명 제과회사가 특정 업체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불법적인 주식상장을 추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6서울조정952·953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제과식품 주식회사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뉴스타운 (뉴스타운)
중 재 부	서울 제1중재부
접 수 일	2016. 6. 30.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정보도, 손해배상 - 피신청인 이의신청)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제과식품이 ○○제과의 상호, 역사, 연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불법적인 주식상장 추진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2016. 2. 2.부터 같은 해 6. 28.까지 총 27회에 걸쳐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적법한 영업양도 계약에 의해 구 ○○제과의 상표권 일체를 양수받았고, 주식상장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면 정정보도 및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의 상표권 양수를 확인하고, 보도 형식 및 횟수, 표현 방법 등을 볼 때 악의성이 있다며, 정정보도 게재와 함께 손해배상 3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해당 기사에 부적법한 내용이 없어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하였다.

### 조정대상보도

- 뉴스타운 - 『○○제과 상장에 전국이 들썩 “뭔 일여?”』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일자 경제/IT면) 외 26건

## ■ 내 용

형태적으로 실물 ○○제과 주식은 있는데 회계(재무제표)상으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세상에 이런 일”에나 나올 해괴망칙한 일일까? “영터리로 회계 처리한 잘못? 아님 정부기관, 채권단, ○○제과 원소유주, ○○제과식품이 짜고 치는 국민 대사기극?” 여하튼 이상야릇한 사건이 터졌다. 국내 유일의 해괴한 사건에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내노라”하는 회계전문가가 분석해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한 사건이다.

바로 1945년 국민의 기업으로 설립돼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제과의 경우다. 사건은 지난 1월 22일 ○○제과식품(주)(대표 신△△)이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주권예비심사청구서’를 접수함으로써 시작됐다.

“○○제과식품은 2001년 7월 □□□ 컨소시엄이 출자한 ○○제과식품제조(주)가 1945년 설립된 ○○제과주식회사의 제과사업부분을 양수하여 설립됐고 이를 2001. 11월 상호 변경한 회사”라며 신규상장을 표방하고 나선 것. 그러자 ○○제과주식회사 실물 주식을 보유한 이들이 ‘○○제과주권회복위원회’란 단체를 결성해 “○○제과식품의 단독상장은 불가하다”며 한국거래소에 25일 진정서를 접수했다.

‘○○제과주권회복위원회’에 의하면 “전국에 산재한 우리 ○○제과 주주들은 정부, 채권단, 법원 등으로부터 사기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우리가 매수한 ○○제과 주식이 ○○제과 주식이 아니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게 웬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냐?”며 “우리 ○○제과주주들의 잘못이라면 1999년 출자 전환된 ○○제과주식을 매수한 죄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들에 의하면 아시안 월-스트리트는 2001. 7. 3 기사에서 “○○제과 채권단은 □□□ Capital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제과 지배지분을 4,800억원에 매각했다고 발표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매각당시 ○○제과 주식은 1999년 출자 전환된 주식이 전부였고 그중 지배지분이라면 1999년 출자 전환된 주식의 51%가 아니냐?”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보유한 주식이 바로 1999년 출자 전환된 주식으로 그 51%에 해당하는 주식이다”고 주장했다. 채권단 등은 “서류상 양도니 자산매각이니 하지만 회사의 상호와 연혁을 모두 넘겼다는 것은 지분매각이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들은 “우리가 보유한 실물주식을 회수해 감자나 소각한 바가 없으니 우리가 가진 이대로를 ○○제과식품 주식 신주로 교환해 상장하는 게 옳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2001. 7. 11설립했으나 1945년 설립된 ○○제과를 모두(○○제과의 제과부분 자산 부채 상표권 연혁 등)인수하였다는 ○○제과식품(주)은 1945년부터의 연혁을 사용하고 있음은 물론 2001년도에 □□□ Capital이 주도하는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양수도나 자산매각이 아닌

‘외자유치’로 표시하고 있어 의혹을 더하고 있다.

양수도나 자산매각으로 회사의 연혁 등을 매도한 사례(판례)가 있는지? 지분매각이든 외자유치든 “자산=자본+부채” 공식에 의해 자본 즉 주식이 존재해야한다는 ‘대차평형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될지? 회계전문가들이 바빠졌다. 만약 ‘○○제과주권회복위원회’의 주장이 옳다면 ○○제과식품(주)측이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재무제표는 허위(?)가 된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뉴스타운(www.newstown.co.kr)의 홈페이지 메인 초기화면의 중앙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한다.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가. 제목 : ○○제과 신규 상장 관련 보도 정정보도문
  - 나. 본문 : 본 뉴스타운은 지난 2016년 2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홈페이지 경제면에 ○○제과식품이 “○○제과” 상호를 무단 불법으로 사용해 부적절한 실적을 쌓았으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상장을 추진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27차례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제과식품이 2001년 7월 체결한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제과식품은 “○○제과” 상호를 포함한 영업 일체를 양수한 정당한 권리자이므로 이러한 상호 사용이 불법행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구 ○○제과 잔존법인은 2001년 지난 상장 폐지 후 청산까지 완전히 마무리된 상황으로 ○○제과의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들은 법적으로 ○○제과식품의 신규 상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임을 전하는 바입니다. 또한 언론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악의적 자극적인 표현으로 ○○제과식품 및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한 바 있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기재 보도문을 뉴스타운 홈페이지 경제/IT면 중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 기재 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기재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홈페이지 각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각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함으로써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30,000,000원을 지급하라.
3. 피신청인이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더하여 지급하라.

## 이 유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보도 형식 및 횟수, 표현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7. 11.

## [별지]

- 가. 제목 : “○○제과” 관련 정정보도문
- 나. 본문 : 본 뉴스타운은 지난 2016년 2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홈페이지 경제면에 ○○제과 식품이 “○○제과” 상호를 무단 불법으로 사용해 부적절한 실적을 쌓았으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상장을 추진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27차례 보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제과식품은 “○○제과”의 상표권자이자 영업양수인으로서 적법하게 상호를 사용하고 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장되었음이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피신청인 이의신청

## ▶ 사례2

신청인이 작곡한 곡이 성의 없고 질 낮은 음원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6서울조정987·988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배○○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인터넷 경향신문)
중재부	서울 제3중재부
접수일	2016. 7. 6.
처리결과	조정성립 (정정보도)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음원 어부징 문제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작곡한 음원을 한 사례로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어부징과 무관하고 음원 수익도 많지 않다며 정정보도 및 1,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조정대상기사 중 “성의 없고 질이 낮다”는 표현은 기자의 주관적 평가이나, 신청인이 어부징 음원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아티스트로 비취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를 권유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인터넷 경향신문 - 『이런 모습 ‘짜퉁 음원’ ... 돈도 귀도 버렸네』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16일자 연예면)

#### ■ 내 용

회사원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아이에게 들려주기 위해 평소 이용하던 음원 사이트에서 ‘겨울왕국’을 입력한 뒤 목록 맨 위에 뜨는 곡을 별 생각 없이 클릭했다. 그런데 흘러나오는 곡은 엉뚱한 경음악이었다. 자세히 보니 앨범 재킷부터 영화 <겨울왕국>과는 상관없는 음원이었다. 아티스트는 ‘편치편치’. 수록곡 목록도 ‘겨울왕국 윈터’, ‘겨울왕국 피아노’, ‘겨울왕국 비트’ 등의 3곡이 나란히 이어져 있었으며 오히려 오리지널 영화 OST보다 더 윗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세 곡 모두 전자악기 등에 샘플로 수록돼 있음직한 조악하고 단순한 음악이었다.

A가 경험한 것과 같은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음원 사이트 멜론에 ‘별 그대’(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줄임말)를 입력하고 정확도 순으로 배열하면 상단에 뜨는 곡목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는 관련 없는 곡이다. 제목만 ‘별 그대’로 되어 있을 뿐 재킷 디자인이나 아티스트는 완전히 다르다. 음악 역시 단순한 경음악 반주가 반복될 뿐이다.

또 다른 음원 사이트 벅스에 ‘Moonlight’(월광)를 입력해 최신순으로 정렬해 보면 어떨까. 위에서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B라는 아티스트의 ‘Moonlight’이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를 생각하고 클릭해보면 처음엔 월광 소나타 1악장의 4마디가 반복되는가 싶더니 이내 다른 연주곡과 뒤섞여 장난스럽게 연결된다. ‘월광’의 이름만을 빌린 영터리곡이다.

최근 주요 음원 사이트에는 이 같은 음원들이 상당수 유통되고 있다. 인기곡이나 유명 콘텐츠의 제목을 붙인, 성의 없고 질 낮은 음원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올리는 ‘음원 어부징’인 셈이다. 이 때문에 음원 사이트 내에서 이용자들이 검색할 때 영터리 음원들이 되레 상위권에 검색되는 경우가 잦다.

관련 업계에서는 2, 3년 전부터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음원 어부징을 통해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다. 일단 소비자가 음원을 클릭하고 나면 해당 음원에 대한 사용료가 발생한다. 곡당 사용료는 많지 않지만 무차별적으로 살포해 양으로 승부하면서 한 달에 수 백만 원씩 수익을 얻는 음원 공급자들이 꽤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을 현혹해 실수로라도 클릭하게끔 만들기 위한 교묘한 방법도 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곡 외에 <수상한 그녀> <비긴어게인> <어벤져스> 등 유명 영화 제목으로 검색할 때 제목만 빌린 엉뚱한 노래들을 꽤 발견할 수 있다.

벅스뮤직 C 그룹장은 “말도 안되는 수준의 음원을 하루에도 수 백개씩 악의적으로 내놓는 업체들이 꽤 있지만 음원 사이트에서 일일이 인위적으로 판단하거나 걸러낼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쓰레기 같은 음원들이 쌓여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며 “검색을 통해 ‘언어걸리는’ 것을 노리는 업체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오리지널 곡이 검색 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현상도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관련업계에서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공유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형편없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일종의 창작물인 데다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무단 전제하는 식은 아니기 때문에 뾰족한 제재 방안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음원 어부징이 많은 장르는 뉴에이지나 동요, 국악, 클래식 등이다. 이들 장르는 가요나 팝에 비해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검색어 상위권에 올려 유지시키는 것이 다른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어부징이 그만큼 잘 먹힌다는 이야기다.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D 사무국장은 “음원 사이트를 이용할 때 무턱대고 검색어 상위권에 있는 곡을 클릭할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의 이름이나 정확한 곡명, 앨범의 재킷 디자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감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경향신문(<http://www.khan.co.kr/>)의 홈페이지 연예면 대중음악면의 기사 목록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가. 제목 : “이런 몫쓸 짝퉁 음원 ... 돈도 귀도 버렸네”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6월 16일자 홈페이지 연예면 대중음악면에 “이런 몫쓸 짝퉁 음원 ... 돈도 귀도 버렸네”라는 제목으로 B의 Moonlight라는 곡을 장난스럽고, 엉터리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해당 곡은 2013년 5월 뮤직 비디오로 먼저 제작하여 발표된 곡으로 당시 제작 과정에 40회 이상의 회의와 영상 촬영 당시 20명이 넘는 스태프 동원된 큰 프로젝트였으며, 해당 음원은 강남의 스튜디오에서 그랜드 피아노로 녹음이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 이런 어부지 현상으로 수 백만 원씩 수익을 얻는 음원공급자 등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B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음원 수익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B는 전혀 그런 수익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어부지를 실제로 하는 음원 공급자와 B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 1. 보도문

가. 제목 : “이런 몹쓸 짝퉁 음원 … 돈도 귀도 버렸네”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지난 2016년 6월 16일자 홈페이지 연예>대중음악면에 “이런 몹쓸 짝퉁 음원 … 돈도 귀도 버렸네”라는 제목으로 B의 ‘Moonlight’라는 곡이 인기곡이나 유명 콘텐츠의 제목을 붙여 클릭을 유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음원 어부징’ 곡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B의 ‘Moonlight’는 음원 어부징과는 관련이 없는 곡이며, 아티스트 B와 음원 어부징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해당 보도는 한국음악 콘텐츠산업협회, 벅스뮤직 등의 제보를 받고 기사화 한 것으로 확인 결과, 신청인은 ‘음원 어부징’으로 수입을 얻은 바 없으며, 보도에서 신청인의 ‘Moonlight’ 곡이 질이 낮고 영터리라는 부분은 기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근거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인터넷 경향신문(<http://www.khan.co.kr/>) 홈페이지 연예>대중음악면 초기화면 상단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2016년 8월 18일 09:00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제1항, 제2항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피신청인이 위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8. 12.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인터넷 경향신문 - 『“이런 몹쓸 짝퉁 음원 … 돈도 귀도 버렸네”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9월 18일자 연예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 사례3

뇌물수수 혐의자에 관해 보도하면서 동명이인인 신청인의 초상을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6서울조정1193·1194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박○○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조선방송 (TV조선)
중 재 부	서울 제5중재부
접 수 일	2016. 8. 19.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정정보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손해배상 - 신청인 이의신청)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넥슨 김정주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을 보도하면서 수수혐의자들의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뇌물수수자 중 1인과 동명이인일 뿐, 조정대상보도의 금품수수 사건과 무관하다며 정정보도 및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제작 과정의 실수를 인정하고 심리 전 신청인 사진이 사용된 부분을 편집하여 다시보기(VOD)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정정보도 게재를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하여, 정정보도 청구는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배상금액에 대해 당사자 간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중재부가 손해배상금 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며 이의신청을 하였다.

## 조정대상 보도

- TV조선 - 강적들 프로그램 『넥슨 김정주의 꼬리자르기②』 제하의 보도 (2016년 8월 4일자)
- 내 용
  - ▷ 강변호사 : 김정주 회장이 진경준 검사장한테만 준 게 아니에요.

(신청인 사진 게재)



당시의 LG 부사장하고 넥슨의 감사한테도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동시에 요구했겠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니까 분명히 이쪽에서 먼저 줬는데 이게 지금 죄수의 딜레마예요. 일단은 문제가 터지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어떠한 행위 아닌가?

- ▷ 이준석 : 이건 약간 의견이 ... 강변호사님이 약간 세 명의 주식공여자 가지고 묶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거기 김상현 대표 같은 분들은 업계 관계자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이고 우리가 쓰리엔이라고 합니다. 넥슨, nhn, 엔씨소프트라고 경영진간의 상대 주식에 가지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씨는 넥슨에 거의 인수될 뻔 했다가 풀려난 케이스고 nhn의 최대 주주 중에 2대 주주가 넥슨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들 간의 주식거래는 진경준 같은 완전 업계 밖에 있는 외부 인사와의 주식거래와는 약간 다른 ...
- ▷ 함익병 : 아니 그것은 다른 얘기에요. 뭐냐면 김상현 대표가 있지만 원래 LG 지주회사가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준 사람에 ... 그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거예요.

## (신청인 사진 게재)



그니까 진경준 검사장 김상현 대표 박○○ 감사 이 세 분은 동시에 받은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미국 가 있는 지사장 ... 이거는 뭐냐 뇌물성 혹은 어떤 그 지주회사 구성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정확하게 나눠 준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뇌물 공여가 먼저 된 거예요.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 정정보도문을 TV조선 <강적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 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지난 8/3자 방송(142회) 중 실수로 동명이인의 사진을 게재한 것과 관련한 정정보도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8월 3일자(142회) 방송 중 넥슨 김정주 대표가 진경준 검사장 및 전 □□□ 감사 박○○ 등에게 4억2천5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방송하면서, 자료화면으로 전 □□□ 감사 박○○의 사진을 3회 인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때 사용된 사진은 금품을 수수한 전 □□□ 감사 박○○의 사진이 아니라, 동명이인인 (주)△△△△의 박○○ 대표님의 사진으로서, 사실과 다른 방송으로 인하여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된 (주)△△△△의 박○○ 대표님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박○○ 대표님은 전 □□□ 감사 박○○과는 다른 인물이며, 넥슨

김정주 대표의 금품전달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처리결과

- 조정성립(정정청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손배청구)

###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2016년 10월 5일까지 TV조선 <강적들> 프로그램에서,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고, <강적들> 제142회(2016년 8월 3일) 방송 다시보기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을 이행한 경우, 정정보도청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9. 29.

### [별지]

- 가. 제목 : <강적들> 제142회(2016년 8월 3일) 방송 관련 정정보도문
-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8월 3일자(제142회) 방송 중 넥슨 김정주 대표가 진경준 검사장 및 전 □□□ 감사 박○○ 등에게 4억2천5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에서, 자료화면으로 전 □□□ 감사 박○○의 사진을 3회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때 인용된 사진은 금품을 수수한 전 □□□ 감사 박○○의 사진이 아닌, 동명이인인 (주)△△△△의 박○○ 대표의 사진으로서, (주)△△△△의 박○○ 대표는 넥슨 김정주 대표의 금품전달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 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2016. 10. 31.까지 지급하고,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을 이행하는 경우, 이 사건 조정대상 방송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 이유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9. 29.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TV조선 - 강적들 프로그램 제151회 『〈강적들〉 제142회(2016년 8월 3일) 방송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10월 5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이의신청

## ▶ 사례4

여성호르몬제의 부작용에 대한 보도에 자료화면으로 사용된 제품은 여성호르몬제가 아닌 단순 건강기능식품으로 보도 내용과 무관하다.

사 건	2016서울조정3 정정청구
신 청 인	○○○○○○○○ 유한회사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MBC-TV)
중 재 부	서울 제7중재부
접 수 일	2016. 1. 5.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정정보도)

## 사건개요

- 피청인은 중년 여성들이 갱년기 증상에 복용하는 여성호르몬제가 오남용 시 자궁근종, 유방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시판 중인 제품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제품은 여성호르몬제가 아니고, 칼슘, 철분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 식품이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조정대상보도 내용과 신청인 제품이 무관함을 인정하고, 인터넷 다시 보기(VOD) 하단에 알람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MBC -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 『[알고계십니까] 갱년기 와서 여성호르몬제 먹었는데 자궁적출을 해?』 제하의 보도 (2015년 11월 16일자)
- 내 용
  - ▷ 기 자 : 그런데 폐경기 후 찾아온 갱년기 증상 때문에 먹었던 여성호르몬제가 자궁근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 김○○ : 에스트로겐이 주입이 되면 없던 근종도 생길 수 있고요 있던 근종은 더 커지고, 유방암을 또 일으킬 수도 있고요.
  - ▷ 기 자 : 여성호르몬이 자궁근종과 유방암 등 여성질환에 관계가 깊다고 말하는 전문의.

그렇다면 주부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MBC-TV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가. 제목 : 건강기능식품을 여성호르몬제라고 잘못 보도한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11월 16일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에서 “갱년기 와서 여성호르몬제 먹었는데 자궁적출을 해”라는 제목으로 여성호르몬제 섭취로 갱년기 여성들에게 자궁근종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본 방송은 “갱년기인가 싶어 여성호르몬제를 섭취하여도 증상이 더 심해졌다”는 리포터의 멘트와 동시에 여성이 ○○○○○○의 □□□□ 제품을 섭취하는 화면을 방송하였는데, 사실확인 결과 ○○○○○○의 □□□□ 제품은 여성호르몬제가 아니라 칼슘, 철분, 미네랄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이에 오보를 바로잡습니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 1. 보도문

[알립니다]

이 방송 중 “알고 계십니까” 코너 시작 후 27초에 보여진 제품은 여성호르몬제가 아니라 갈슘, 철분, 미네랄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임을 밝혀 드립니다.

2. 피신청인은 위 1항의 보도문을 인터넷 MBC에 게재된 본 사건 조정대상방송 다시보기 화면 (<http://www.imbc.com/broad/tv/culture/choi4men/vod/index.html>) 최하단에 2016년 1월 25일까지 게재하되, 글자체 및 글자크기는 해당 화면의 “[알고계십니까] 갱년기 와서 여성호르몬제 먹었는데 자궁적출을 해?”와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2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한 정정보도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그 소속 임직원(외주 제작사 포함)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1. 20.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iMBC -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2015년 11월 16일자, 2376회) 다시보기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 사례5

시화호 아내 토막 살인사건의 범인이 19년 전 중국에서도 동일한 수법의 살인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6서울조정175·176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김○○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MBC-TV)
중 재 부	서울 제8중재부
접 수 일	2016. 2. 12.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정정보도)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시화호 아내 토막 살인사건의 범인이 19년 전 중국에서도 동일한 수법의 살인을 저질렀고, 투먼시 공안국이 해당 사건의 용의자로 위 범인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중국에서의 살인사건은 동명이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신청인과는 무관하다며 정정보도 및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해당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통해 중국 투먼시 토막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중국 공안 수사팀이 한국에 파견되거나 협조한 사실 및 신청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사실 등에 대해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인이 중국 공안으로부터 투먼시 토막 살인사건의 용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시화호 아내 토막 살인범, 中서도 19년 전 토막 살인』 제하의 보도 (2015년 11월 21일자)
- 내 용
  - ▷ 앵 커 : 올 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시화호 토막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범인이 똑같은 수법으로 이미 중국에서도 토막 살인을 저질렀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 ▷ 기 자 : 지난 1996년 10월, 북중 접경지역인 투먼시의 한 다리 아래에서 20살 안팎으로

보이는 여성의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공안은 같은 마을에 사는 중국동포 김○○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이미 잠적한 뒤였습니다.

19년이 흐른 지난 7월 투먼시 공안국은 한국의 방송보도를 보고 시화호 토막 살인사건의 수법이 투먼시 사건과 비슷하고 피의자 이름이 같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 ▷ 이△△ 시흥경찰서 수사본부장/지난 4월 : “처가 중국 내 주거지 매입을 위해 돈을 보내라고 재촉하자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쓰러뜨리고 ... ”
- ▷ 기 자 : 현지 공안은 곧바로 한국으로 수사팀을 보내 김○○이 투먼시 토막 살인사건의 용의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은 지난 4월 시흥시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 전 오원춘, 작년 11월 박춘풍 사건에 이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중국동포의 흉악 범죄였습니다.
- ▷ 김○○ : “후회합니다. 집사람한테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 ▷ 기 자 : 중국 공안 당국은 김씨의 중국내 살인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돼있는 만큼 “양국간 공조를 통해 사법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 정정보도문을 MBC-TV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가. 제목 : ‘시화호 아내 토막 살인범, 中서도 19년 전 토막 살인’ 관련 정정보도문
-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2015. 11. 2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시화호 아내 토막 살인범, 中서도 19년 전 토막 살인”이라는 제목으로 김○○씨가 19년 전에도 중국에서 같은 수법으로 토막 살인을 저질렀고, 중국 공안으로부터 중국 투먼시 살인사건의 용의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김○○씨는 당시 현대상선에 재직하며 승선한 상태였고, 중국 공안으로부터 용의자라는 사실을 확인받은 사실이 없으며, 중국 투먼시 살인사건은 동명

이인에 의해 범해진 사건으로, 김○○씨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시화호 토막 살인범 중국서도 토막 살인” 관련 보도문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2015년 11월 21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시화호 토막 살인범 김○○ 씨가 19년 전 중국 투먼시에서도 토막 살인을 저질렀고 중국 공안으로부터 투먼시 토막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확인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국내에서 현재까지 중국 공안으로부터 투먼시 토막 살인사건의 용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바가 없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6. 4. 8.(금)까지 제1항의 보도문을 <MBC-TV> 평일 오후 5시에 시작하는 <이브닝뉴스> 프로그램의 말미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통상의 정정보도문 아래자막 크기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4. 1.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MBC-TV - 이브닝뉴스 프로그램 『“시화호 토막 살인범 중국서도 토막 살인” 관련 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6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 사례6

익산시가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뉴스통신사에 광고비를 집행한 것이 언론 관련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6전북조정8·9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익산시
피 신 청 인	익산인터넷뉴스
중 재 부	전북중재부
접 수 일	2016. 3. 28.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정정보도, 손해배상)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익산시가 언론 관련 조례의 입법 취지와 달리 예산을 부당하게 운용 및 집행하여 오히려 익산지역 신문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익산시는 조례에서 정한 ‘운용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5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언론사는 신문과 방송에 한하며, 뉴스통신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뉴스통신사에 대한 광고비 집행에 문제가 없다며 정정보도 및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해당 조례를 확인하고, 익산시에서 뉴스통신사에 대해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 1,000,000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1

- 익산인터넷뉴스 - 『[탐사] 익산시, 익산시의회 ‘익산 지역신문 죽이기’ 편승(1)』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1일자 핫이슈면)

## ■ 내 용

익산시의회가 지난 1월 11일 ‘조례 제1539호’로 “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언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이 조례제정으로 인해 익산시에 출입하는 대형 언론사만 살아남고 지역을 대표하는 소수 언론사는 죽어가고 있어 법 취지에 맞게 운용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익산시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예산집행 투명성을 언론사와 시민들에게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공개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면서 의회에서 제정한 언론조례가 법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검토와 함께 소수언론과 익산 지역신문이 조례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형평성에 ‘방점(傍點)’을 두어야 한다.

특히 익산시의회에서 제정한 언론 관련 조례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특정 언론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애매모호(曖昧模糊)’하게 제정된 조례로 인해 시에서 조례운용에 있어 허점투성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언론사들이 속출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 본지(익산인터넷뉴스)는 익산시의회에서 제정한 언론 관련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과 운용에 있어 형평성, 차별성 등을 하나씩 짚어가며 ‘기획, 탐사’로 보도하여 익산시의회에서 제정한 언론 관련 조례에 익산시가 편승하여 대형 언론 위주의 정책을 펼칠 것에 대비해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지역사회 구석구석 벌어지는 일들을 세심하게 보도하는 소수 지역신문 말살정책에 사명을 다하고자 보도의 목적을 두었다.

## 조정대상보도 2

- 익산인터넷뉴스 - 『[탐사2] 익산시, 익산시의회 언론조례 무시하고 부당혈세(광고비) 집행』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22일자 핫이슈면)

### ■ 내 용

익산시가 시를 출입하는 뉴스통신사에게 혈세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시는 통신매체인 ‘뉴스1’에게 언론조례가 제정, 공표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혈세를 지원해 왔다. ‘뉴스1’ 매체는 2011년 5월 26일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처음 등록하여 채 5년이 안되게 사업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언론조례가 제정, 공표된 이후로도 부당하게 이 업체에게 광고비를 지속적으로 집행하여 오면서 같은 조건에 있는 일부 지역신문에게는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차별성뿐만 아니라 법(조례) 위반으로 언론사와 시, 의회 간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2016년 1월 11일 제정된 ‘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에 따르면 “언론이란 해당법률에 의해 설립된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통신사, 기타 특수 전문지(주간,

월간, 잡지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아울러 제3조(운용대상) 2항 1호 '운용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5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4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통신사)'이 이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조(홍보비 운용기준) 2항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통신사, 기타 특수 전문지(주간, 월간, 잡지 등)는 매체의 객관적인 영향력 및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홍보비를 운용해야 한다'라는 익산시에서 홍보비를 운용하는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를 출입하는 '뉴스1(통신사)' 매체는 2011년 5월 26일 서울시로부터 '통신판매업'으로 등록 신고를 필하고 있어 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운용대상) 2항 1호 '운용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5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어 익산시는 5년이 안 된 지역신문 탄압을 타겟으로 삼으면서 중앙에 있는 대형 언론사에게는 위법을 감수하여 가면서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았나"하는 의문을 떨치게 하고 있다. 익산시청에는 중앙에서 활동하는 노컷뉴스(인터넷신문), 연합뉴스(통신사), 뉴시스(통신사), 뉴스1(통신사) 등 인터넷신문 매체와 뉴스통신 매체 기자들이 출입하면서 지역신문 기자들과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대형 언론을 앞세워가며 소위 갑질의 행태를 형성하여 지역신문들의 공간(기자실)을 차지하고 엄청난 시 혈세(광고비)를 지원받으며 공간을 비우는 등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익산시의회에서 제정, 공표한 언론조례는 중앙에서 활동하는 매체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없는 '무용지물(無用之物)'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일부 사람들은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까지 알권리를 위해 시민들에게 보도하는 소수 "지역신문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조례"라는 말들이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조례에 따라 시 혈세를 집행해야 할 익산시가 특정 언론사에게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광고비를 지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며 관련 부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신문은 대책 마련에 힘을 합쳐야 한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익산인터넷뉴스 홈페이지 최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72시간 이상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2건의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각각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72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운영에 관한 조례' 보도 관련 정정 및 사과

나.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3월 21일 및 22일자 탐사면에 “익산시, 익산시의회 언론조례 무시하고 부당혈세(광고비) 집행”이라는 제목으로 익산시에서 관련 조례에서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A뉴스통신사에게 부당하게 혈세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신문 보도는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용 조례에 따르면 ‘운용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5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지원받는 언론사는 신문과 방송에 한하며 뉴스통신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익산시에서 A뉴스통신사에 대해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신문에서 조례 내용과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에서 부당하게 특정 언론사에게 혈세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해서 익산시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익산시 언론 조례 집행〉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21일 및 22일자 탐사면에 “익산시, 익산시의회 언론조례 무시하고 부당혈세(광고비) 집행”이라는 제목으로 익산시에서 관련 조례에서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A뉴스통신사에게 부당하게 혈세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신문 보도는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용 조례에 따르면 ‘운용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5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지원받는 언론사는 신문과 방송에 한하며 뉴스통신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익산시에서 A뉴스통신사에 대해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신문에서 조례 내용과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에서 특정 언론사에게 부당하게 협세를 지원하고 있다고 연속 보도해서 익산시에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6년 4월 12일(화) 정오까지 제1항의 보도문을 익산인터넷뉴스 홈페이지 초기화면 최상단 위치에 게재하되, 게재형식은 다른 상단 기사와 동일하게 하고 보도문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보이도록 한다. 게재 후 96시간 이상 초기화면 최상단에서 아래로 3번째 이상 위치를 유지한 후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본 합의서에서 정한 제목, 본문, 게재방법 등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피신청인은 2016년 4월 11일(월) 정오까지 조정대상기사 2개를 포함한 총 3개의 보도문 (「[탐사1] 익산시, 익산시의회 ‘익산 지역신문 죽이기’ 편승(1)」, 「[탐사2] 익산시, 익산시의회 언론조례 무시하고 부당협세(광고비) 집행」, 「[탐사3] 익산시 홍보담당관실, ‘전라북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익산인터넷뉴스 ‘제소(提訴)’」)을 익산인터넷뉴스 홈페이지 및 기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한다. 또한 위 보도문이 포털 블로그, 카페, 웹게시판 등 각종 인터넷 게시공간에 복사 및 전제된 경우 피신청인 언론사 명의로 포털 사이트 등 해당 게시판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도록 하며, 신청인이 포털 검색 등을 통해 발견한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게 피신청인이 해당 전제글에 대한 삭제권한을 신청인에게 위임한다. 단, 인터넷 게시공간에 대한 삭제의무는 2016년 7월 31일까지에 한한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6년 5월 31일까지 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2016년 6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상기 합의를 모두 이행하는 조건으로 본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기사작성기자 등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해 일체의 다른 법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2016. 4. 8.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익산인터넷뉴스 - 『익산시 언론 조례 집행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2일자 초기화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제2장 반론보도 사례





## 제2장 반론보도 사례

### ▶ 사례7

모 제약회사의 특정 약제에 대한 약가 산정 및 약제 심의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6서울조정977·978, 2016서울조정1021·1022(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주식회사 ○○○○○○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올댓닥터스 (라포르시안)
중 재 부	서울 제2중재부
접 수 일	2016. 7. 4.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반론보도)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화상환자용 특정 세포치료제에 대한 급여 결정과 약가 결정에 대해 의혹이 있다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의 기고자가 전제한 사실관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고, 해당 약제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약가를 산정 받았다고 정정보도 및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조정대상기사가 외부 필자의 기고문으로서 사실 판단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상응하는 신청인 측의 기고문을 게재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반론취지의 기고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라포르시안 - 『[기고] 지난주 약제급여평가위 회의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나?』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0일자 오피니언면) 외 4건

#### 내 용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모 위원회 회의에서 앞으로 바이오 의약품의 3상 임상시험을 면제

해주자는 안전이 나왔고 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부응한 사항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그들이 말하는 규제완화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들인지 모르겠으나 이는 3상 임상을 면제 해주고 바로 환자들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제약회사가 힘도 안들이고 국민의 건강 보험료와 환자의 몸뚱이로 임상실험을 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전 제품이야 기술이 좀 덜 된 것이라도 시장에 나와서 소비자들이 사는가 안 사는가에 따라 그 승패를 가름해 볼 수도 있지만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그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야 하는 의약품은 환자의 생명과 몸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에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별도의 토론과정이나 의견수렴 없이 일개 위원회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이다. 하긴 그런 것이 거기 한 곳뿐이라!

이거보다는 사안이 작지만, 지난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 위원회도 마찬가지로지만 보통 위원회의 회의 방식은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면 일차 문제의 토론을 진행하고 문제제기된 사항에 대한 자료보완이 필요하면 안전결정을 다음 회의로 미루거나 하는 게 보통이다. 그리고 그 후의 회의에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위원장이 표결 상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군다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그리고 의료의 신기술 등에 대한 결정은 그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기초자료 보완 요구가 더 엄격해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하다가 터진 사건이 바로 옥시의 가슴기 살균제 사건이다. 일반 생활용품도 그럴진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료의 제사안들은 그만큼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주 열렸던 약평위에서 ‘△△△-△△’에 대한 결정은 전혀 그렇지 못하였다. 특정 약제에 대한 급여 결정과 약가 결정 사안 모두에 대해 의심스럽기 짝이 없는 심의를 했기 때문이다. 앞서 2014년에 보건 의료 시민단체인 ○○○○네트워크는 제약회사 ○○○○○○(당시의 회사명은 □□□□)의 약제인 ‘△△△’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었고,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져 이의 결과로 해당 약제의 가격이 조정되었다. 이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 회사는 회사 이름을 ‘□□□□’에서 ‘○○○○○○’으로 바꾸고, 이번에는 다른 약제인 ‘△△△-△△’를 급여 신청한 것이다.

보통 급여와 약가의 결정은 기존 약제와의 비교실험을 통한 효능효과의 증명과 기존 약제의 가격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도 별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하지만 이번 △△△-△△에 대한 심의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야기 하기에 앞서 일단 두 가지 약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면 다음과 같다.

화상 환자에게 쓰이는 세포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는 국내에 두 곳이 있다, 하나는 ◇◇사이언스이고 또 하나는 ○○○○○○이다. ◇◇사이언스의 제품인 ☆☆☆은 세포를 배양한 쉬트를 화상 부위에

붙이는 치료제이고,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한 ○○○○○○의 ‘△△△-△△’라는 제품은 세포를 다른 약제와 혼합하여 연고처럼 상처부위에 바르는 약제이다. 자, 그럼 지난 주 급평위 위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보도록 하자.

첫 번째는 일단 이 약이 기존의 보험급여 약제인 ☆☆☆의 카피약이라면 왜 ☆☆☆과의 비교임상 자료가 없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나와야 했다. 이를 설령 식약처가 허가해주었다 하더라도 다시 이에 대한 관련 데이터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급평위 회의는 이런 요구를 아예 하지 않았다.

두 번째, △△△-△△는 다른 치료재료를 섞어서 바르는 연고제로서 피부를 배양해서 파스처럼 상처부위에 붙이는 ◇◇사이언스의 ☆☆☆과 일단 제형도 다를뿐더러 다른 성분의 치료재료가 섞여 있어서 이미 다른 약임에도 불구하고 약평위는 두 제품의 주요성분인 세포의 종류와 적응증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카피약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근거가 매우 불분명하다.

세 번째, 이렇게 ○○○○○○의 제품인 △△△-△△처럼 바르는 세포치료제는 쉐트 형태로 붙이는 약제와는 달리 다른 치료재료와 섞어서 바르는데 이로 인한 효과가 해당 세포 때문인지 혼합한 다른 치료재료에 의한 효과 때문인지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그 효과를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약평위는 애초에 이런 임상 데이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어야 한다.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제기를 왜 안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네 번째, 좋다. △△△-△△가 백번 양보해서 ☆☆☆의 복제약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이제 가격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가격과 관련한 문제는 두 제품이 개당 약제의 함량 세포수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후발제품인 △△△-△△의 가격이 2배 가량 비싸다는 점이다. 오리지널 약과 복제약의 관계라면 함량을 비교해야 하고 세포치료제에서 함량은 세포수로 표시하는 게 식약처의 방침이라면 약가를 세포수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이번 심평위 급평위는 세포수가 같음에도, 단지 △△△-△△가 기존 약제보다 두 배 가량의 면적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두 배 가격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했어야 마땅하다. 이 같은 논리라면 그럼 기존 약제인 쉐트 형태의 ☆☆☆을 얇게 분리해서 두 장으로 만들면 두 장 값을 줘야 하나? 또 혹시라도 병원에서 바르는 약을 2개 용량으로 더 얇게 넓게 발라서 3개 용량의 비용을 청구하면 심평위는 이를 걸러낼 방법이 있는가? 또 이 제품을 변형하여 같은 세포수지만 액체로 만들어서 더 넓은 면적에 사용할 수 있다면 돈을 더 줘야 하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전문가가 득실하다는 급평위를 통과했다하니 이 나라가 정말 돌아가도 한참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뿐이다.

결론적으로 설령 복제약이라 하더라도 기존 가격 대비 최대 80~90%에 가격이 책정되는 게 맞다. 물론 이 정도로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도 여전히 의심스럽지만, 이번 약평위의 회의에서는 위 안건과 관련하여 유례없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한다. 여러 위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러한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여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었다고 한다. 왜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였을까? 자료보완을 하고 재심사를 하면 될 것을 반대가 그리 많았는데도 왜 상식적이지 않게 통과시켰을까?

다시 감사원 감사청구를 준비하겠지만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도 뜯어봐야겠다. 가장 좋은 길은 원칙과 객관성에 기초하여 재심의를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 위원회의 도덕적 가능자를 자꾸 의심하게 될 것이다. 제발 좀 나라를 정상적으로 만들자.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라포르시안(<http://http://www.rapportian.com>)의 홈페이지 뉴스 메뉴 중 오피니언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각각의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기사 DB에 보관하여 조정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피신청인이 신청인 및 신청인의 제품과 관련하여 5회에 걸쳐 보도한 기사 외에 중재 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관련 추가보도가 있다면 그 또한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피신청인이 본 건 관련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의 제품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보도에서 제기한 의혹이 공적인 절차에 따라 사실로 인정되기 전에는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및 신청인의 제품을 실명으로 거론하여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올댓닥터스는 2016년 8월 12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라포르시안 홈페이지 <오피니언> 섹션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에 [별지]의 보도문 제목을 09:00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7469](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7469),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7539](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7539),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7634](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7634),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7699](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7699),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7787](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7787)) 본문 하단에도 [별지]의 보도문 제목을 상시 게재해, 클릭하면 [별지]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별지] 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각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게재한다.
2.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8. 5.

## [별지]

제 목 : [기고] 심평원에 대한 문제제기의 칼끝은 누구를 향해 있나?

본 문 : 지난 6월 16일 ○○○○○○(이하 ‘당사’)에서 개발한 심부2도 화상에 쓰이는 세포치료제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통과한 바 있다. △△△-△△가 약평위를 통과하자 ○○○○네트워킹의 전 대표인 강○○ 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거의 매주 기고문을 통해 심평원과 식약처를 질타하며 글을 쏟아내고 있다. 당사는 이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의 결과로 본 기고문을 통해 강○○ 씨의 주장 중 당사의 제품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하려 한다.

더구나 기고자인 강○○ 씨는 ○○○○네트워크의 전 대표이고 당사와 건강세상 네트워크는 한 차례 약연으로 얽혀 있으며,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당사는 2014년 ○○○○네트워크가 당사의 다른 제품인 △△△에 대하여 근거 없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당사가 보도자료의 작성자를 형사고발하여 검찰로부터 명예훼손과 영업 방해로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상대는 약식기소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정식재판에서 공익적 목적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로 무죄를 받기는 했으나, 현재 검찰에서는 유죄의 취지로 항고중이어서, 아직 최종심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당사는 형사고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미묘한 시기에 ○○○○네트워크의 전 대표이자 현 고문인 이가 당사에 대하여 글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기고문의 겉으로 드러난 요지는 심평원을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회의 비밀스럽고, 비전문적인 운영으로 공적자원인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축날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의 약평위 통과인 것처럼 말하면서, 급기야 다른 매체에는 △△△-△△가 물약일 수도 있는데 정부가 허가를 내주고, 보험재정까지 퍼주게 생겼다는 요지의 기고문까지 신기에 이르렀다. 사실이라면 당사가 돌팔매를 당해도 할 말이 없겠지만, 100억 원에 육박하는 연구개발비를 쓰면서 10년이 넘는 연구개발과 임상 1, 2, 3상 및 품목허가라는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당당하게 허가를 받은 국내 중소 바이오벤처기업이 만든 의약품을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이렇게 매도되어야 하는지 참담할 따름이다.

공공기관의 위원회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사회운동가의 주장에 대하여 당사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그 주장의 근거로 당사와 당사의 제품을 사실과 다르게 매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고자는 심평원의 약평위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신기 위해, 부적격한 업체에서 제조한 부적절한 제품이 해당 위원회를 통과하여, 공적자원인 건강보험 재정이 부당하게 지출되게 되었다라는 논리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러한 기초에서 당사와 당사 제품의 실명을 거론하고, 급기야 경쟁사 제품과 주관적인 비교까지 하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나름 과학적인 근거라고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첫째, △△△-△△의 건강보험 등재가 건강보험 재정을 축낼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자. △△△-△△는 현재 심부 2도 화상에 쓰이고 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이라는 제품의 대체가능약제이다. 새로운 질환이나, 그간 보험적용이 안 되던 분야에 보험 적용을 결정하는 제품처럼 보험재정이 추가로 책정되어야 하는 시장이 아닌 것이다.

즉 이미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고 있는 분야이고, 하나의 제품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경쟁 제품이 생긴 것이다. 독점시장에서 경쟁시장으로 가는 것은 경쟁사를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더군다나 의약품 시장에서는 대체재가 존재하여야 환자의 선택권과 사용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고, 유사시 한쪽의 제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환자의 진료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 △△△-△△가 건강보험에 진입함으로써 추가적인 보험재정의 손실은 없는 반면, 시장의 선택에 따라 경쟁사의 제품 매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약평위를 통과한 제품을 재심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탈락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이러한 주장은 적절한 대체가능약제가 있음에도 독점시장을 유지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에 다르지 않다.

둘째, 강○○ 씨가 주장한 당사 제품에 대한 문제들이 사실인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자. 강○○ 씨는 △△△-△△를 복제약이라고 했으며, 그러한 가정하에 글을 썼다고 스스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밝힌 바 있다. 또한 △△△-△△에 들어가는 폴록사머407을 혼합제제로 주장하며, 그에 대한 특허까지 찾아가며 복합제인 것처럼 표현하였다. 그에 따라 △△△-△△의 유효성과 임상 프로토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세포수로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임상결과를 비교해보니 경쟁제품에 비교하여 우월할 것이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는 복제약이 아니다. 약품의 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에서 공식적인 답변서를 통해 복제약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음에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의 답변을 제쳐두더라도 의약품허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복제약의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등의 간략한 임상을 통해 동등성만 입증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제약사가 복제약의 허가를 위해 임상 1, 2, 3상을 거쳐서 품목허가를 받는지 묻고 싶다. 품목허가 후 시판 후 조사라는 과정을 통해 다시 한 번 검증 절차를 거치는 과정도 남아있다. 전제나 가정이 틀리면 그로부터 도출된 결론 또한 사실이 아님은 자명한 것이다.

△△△-△△에 포함되어 있는 폴록사머407이 유효한 약제성분이 아닌 부형제라고 심평원이 답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록사머407의 원료제조사의 해외특허 출원내용에 ‘화상환자에 일정한 효과가 있다’라는 근거를 들어 복합제재이고 따라서 폴록사머407과의 대조군 임상이 없었던 것은 잘못이라 주장하고 있다. 당사는 폴록사머407을 세포의 운반체로 사용하는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약품특허목록으로 등재한 바 있다. 폴록사머407은 ‘가용화제, 겔화제, 계면활성제,

기제, 부형제, 봉해제, 습윤제, 안정화제, 용제, 유화제, 점증제, 현탁화제'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첨가제로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다. 폴록사머407이 화상환자의 상처치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폴록사머407의 내재된 약리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처에 습윤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어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상처를 깨끗한 물로 씻어내면 상처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맹물을 의약품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조군 임상은 시판 허가된 의약품 또는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제제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화상 또는 피부상처 치료를 위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이 없는 폴록사머407을 환자에게 적용하여 대조군 임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내 임상시험 규정에도 맞지 않고, 비윤리적인 임상을 하라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폴록사머407의 특허는 단지 출원되었을 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이고 특허 출원인에 의해 포기된 특허이다. 포기된 특허임을 모르고 그런 주장을 한 것인지, 알고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는 당사로서 알 길은 없다.

△△△-△△의 가격을 경쟁제품과 비교하여 세포 수에 따라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세포치료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온 것이다. 만일 두 제품이 동일한 세포라는 전제가 맞다면 그러한 주장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두 약제 간 유효성분은 제조방법, 특성, 규격 등이 다른 주성분 세포이며, 아울러 두 제품의 제형과 용법용량 등도 상이한 세포치료제이므로 세포수를 기준으로 약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유효한 효과면적에 따라 가격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례로 국내에서 허가받은 A라는 세포치료제가 있다. 이 약의 식약처 허가사항을 보면 하나의 제품에 들어가는 세포수가 1~4×10<sup>7</sup>개로 허가되어 있다. 즉, 동일한 제품이지만 제품에 따라 세포수가 적게는 1천 만 개에서 많게는 4천 만 개까지 네 배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강○○ 씨의 주장대로라면 세포 수에 따라 제품의 가격을 다르게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식약처에서 이러한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것은 그 정도 범위 내의 세포수일 때 기대되는 치료 효과가 동등하다는 임상자료를 근거로 허가를 해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세포치료제의 경우 기존 화학약제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특성에 맞는 허가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경쟁사 제품과 임상결과를 비교하여 당사의 △△△-△△가 열등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임상대상자의 평균연령과 상처의 깊이 및 면적에 대한 분석 없이 재상피화 기간만을 가지고 효과를 분석한다는 것은 공정하고 동등한 비교를 할 줄 모르거나, 의도를 가진 비교로 봐야 할 것이다. 두 제품의 직접비교 논문은 없으나 간접적으로

비교하거나, △△△-△△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들은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다. 이 지면을 통해 경쟁사 제품과 비교하는 일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 필요치도 않다. 강○○ 씨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라도 당사는 그러한 자료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둔다.

당사는 한해 수 백 수 천억의 흑자를 내는 대형 제약사도 아니고, 현재 매년 수 십억의 적자를 보면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며, 나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의미 있는 치료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제 이십년 가까운 연구결과가 의약품으로 하나 둘 세상의 빛을 보려하는 시기에 와 있다. 이번 △△△-△△ 외에도 현재 손상연골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연골치료제의 임상을 마치고 내년도 품목허가를 준비 중이다. 시민사회활동가에게 지탄받아 사회악으로 적절되어야 할 부도덕한 기업은 더더욱 아니다. 기고자의 의도가 공공기관의 합리적 개혁이지, 개별기업에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목적을 위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당사가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사는 시민사회활동가의 활동을 막을 이유도 막을 능력도 없다. 다만 무엇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또한 이것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강○○ 씨의 과거 전력으로 보았을 때 애초부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문제제기를 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2014년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당사와 당사 제품에 대해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왜 당사에 대한 취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당사가 답변을 거부하면 거부하는 대로 사실을 쓰면 될 것이고, 당사의 해명이나 제공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해보고 글을 썼다면 한층 더 기고자의 글에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강○○ 씨의 정의감과 열정 그리고 시민사회활동가로서의 역량이 제대로 필요한 곳에 발휘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것이 사회 전체의 성숙이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며, 당사로서도 그러한 일이라면 돕지 않을 이유가 없다.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조선일보- 『[반박기고] 심평원에 대한 문제제기의 칼끝은 누구를 향해 있나?』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10일자 오피니언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 사례8

사드(THAAD) 보도와 관련하여 KBS 사내에 보도지침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6서울조정1111·1112, 2016서울조정1113·1114(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한국방송공사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JTBC, 인터넷 JTBC)
중 재 부	서울 제3중재부
접 수 일	2016. 8. 4.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반론보도)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의 주장을 인용해 한국방송공사(KBS) 측이 사드(THAAD) 보도와 관련한 보도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KBS 사측과 노조 간의 감정대립이 격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드 보도 관련 내부 보도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정보도 및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이 조정대상보도의 전체 분량 대비 신청인 측 반론 내용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반론보도 게재를 요청한다는 의사를 확인하였고, 피신청인도 이 점을 수용하여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JTBC - 정치부회의 프로그램 『[국회] KBS 보도지침 논란 ... 야당 “청문회 갈 수도”』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22일자, 인터넷 JTBC 7월 22일자 뉴스면)

## ■ 내 용

[앵 커] : 다음은 국회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공영방송 KBS 내부가 요즘 대단히 시끄럽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가 최근 “사측이 사드 문제와 관련한 ‘보도지침’을 내렸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죠. 마침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우려를 담은 논평을 내놨던 해설위원이 갑자기 인사발령을 받으

면서, 이런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치권까지 나서서 사드 보도지침 문제를 거론하면서요, 정치 쟁점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22일) 국회에서는요, 양 반장이 이 문제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회 반장/양원보] :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시는 이 화면은 말이죠. 지난 11일 오전 KBS 1TV에서 방송됐던 뉴스광장의 〈사드 배치 결정 … 과제는?〉이란 제목의 뉴스 해설입니다. 2분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이걸 뭐 여기서 다 보여드릴 순 없고, 제가 대강의 내용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로 험난한 앞날 예고, 뭐 당연하죠, 예.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위협 우려, 실제 위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가능성,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선의 설득 노력 따라야, 당연히 정부가 최선의 설득을 해야겠죠. 뭐 이런 겁니다. 자, 어떠십니까? 정강현 반장, 이 논평 좀 보시니까 어떤 생각 드시나요?

[야당 반장/정강현] : 그냥, 뭐 일반론이죠. 누구나 할 만한 그런 평, 그런 쉬운 내용 같은데요.

[국회 반장/양원보] : 그렇지요, 그런데 이 논평이 “편향돼 있다”, 혹은 “분란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분들이 다름 아닌 공영방송 KBS 고위층에 계신다~ 라고 KBS노조 본부가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요, 고대영 KBS 사장이 앞서 소개해드린 그 논평을 거론하면서, “중국 관영매체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안보에 있어선 다른 목소리가 있어선 안 된다”는 그런 우려를 전달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 나흘 뒤에 아까 그 논평을 읽었던 그 해설위원은 갑자기 방송 문화연구소라는 곳으로 발령이 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노조의 주장입니다. 당연히 KBS 사측은 “고대영 사장이 사드 보도에 원론적인 언급만 했을 뿐,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보복 인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7월 15일. 그러니까 나흘 뒤에 똑같은 시간에 아주 재미난 광경이 펼쳐집니다. 또 다른 해설위원이 그 같은 시간에 출연해서 사드 논평을 냈는데 “국론 분열은 북한 핵보다 더 무섭다, 북한의 도발을 용납 않는 국민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분은 객원 해설위원입니다. 당연히 본업이 따로 있는 분이죠. ○○○○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KBS엔 해설위원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굳이 객원 해설 위원까지. 뭐, 어쨌든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아까 뉴스해설이 나가기 전날이었던 7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다”라는 말을 남기고 몽골로 떠났지요.

자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면서, KBS 사측과 노조 간의 이 감정대립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성주군민들의 반발을 소개하는 리포트에까지 사측의 이런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 KBS, 이제는 좀 경고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것이 워싱턴에서 지시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자, 다른 언론사의 내부 속사정을 얘기한다는 게 저 역시 조금은 불편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요, <KBS 보도지침 논란, 야당 “청문회 갈 수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앵 커] : 네, 저희가 얼마전에 세월호 참사 당시 KBS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당시 수석 소식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KBS 얘기를 하게 됐네요. 지금 사드 보도지침 의혹이 KBS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구요, 아까 뭐 청문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치부 회의에서 아마 다룰 만한 사안이 된 거 같구요. 일단 집중발제에서 우리 양반장이 얘기를 했지만, 한 해설위원의 인사로 인해서 이 사안이 더 지금 촉발이 됐네요.

[청와대 반장/임소라] : 네,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에 따르면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 11일 오전 뉴스해설이 나간 그날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고대영 사장이 안보에 있어서 다른 목소리가 나가면 안 된다, KBS뉴스에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고, 얼마 있다 해당 해설위원이 사내 방송문화연구소라는 곳으로 발령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는 명백한 인사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저도 논평을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사드문제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이 있는 걸 아는데 중국이 경제보복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국이 반길 수는 없는 사안이라서. 이런 내용을, 내용이 담긴 논평이 과연 인사까지 내야할 사안이었나 의문이 조금 생겼습니다.

[앵 커] : 네 뭐 일단은 KBS 노조의 주장이잖아요. 노조의 주장이고 뭐 사측에서는 당연히 반대 입장을 내놔겠죠.

[야당 반장/유상욱] : 네, 사측에 연락을 직접 해봤는데요. 일단 보도자료를 참고해라 그러면서 메일을 보내줬습니다. 그 메일을 받아보니까요 문제의 임원회의에서 고대영 사장이 ‘사드 현안을 보도할 때 외교적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

특정 뉴스에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 특정 해설위원 인사조치 지시도 없다, 없었다. 사실과 다르게 임원회의 내용이 알려진데 대해 관련자를 엄중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지난 15일 단행된 인사는 원칙에 따른 인사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야당 반장/정강현] : 근데 이게 시점이 참 절묘합니다.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해설위원 중에 딱 그 사드 논평하신 분이 인사를 당했을까요? 아무튼 저런 사측의 해명에 노조는 기존 입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성재호 본부장/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 임원회의 전달사항이라 그래가지고 쭉 그날 다 퍼지는데요, 뭐.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와서 무슨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듯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그러면 없어집니까? 더군다나 이정현 녹취록 관련된 보도국의 침묵에 대해서 비판했던 기자까지 제주로 발령 내버렸잖아요.

[앵 커] : 네, 지금 뭐 KBS 노조위원장 주장을 들어봤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 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물론 지금 사측에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요. 근데 아까 마지막 부분에서 들어보니까 이정현 녹취록을 비판한 기사를 제주도로 발령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는데, 이걸 또 어떤 내용입니까?

[국회 반장/양원보] : 네,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세월호 참사 당시에, 당시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정부비판 뉴스에 대해서 좀 빠라 이런 녹취록이 공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KBS에 한 기자가 그런 어떻게 보면 치부가 드러났는데도 KBS 보도국이 그거에 대해서 일언반구 언급도 없고, 반성한다는 얘기도 없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잠잠하니까 기자협회보에다가 그런 자신들의 상황을 비판하는 글을 쓴 겁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 기자 역시도 그 해설위원이 인사가 났던 그 당일날 같이 갑자기 제주방송총국으로 발령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분 같은 경우는 6개월 전에 경인총국으로 발령이 난 상태였는데 6개월만에 또 제주도로 발령이 난 겁니다.

[야당 반장/정강현] : 정말 좀 이례적이긴 한 거 같아요. 보통 인사라는 게 1년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보통 최소, 거의. 그런데 이분이 6개월 만에 또 인사가 난건데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을 제주도로 보낸 거면 유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KBS 내부에서도 그런 공감대가 있는 거 같아요. 문제 인사가 난 뒤에 기수별로 성명을 내면서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앵 커] : 네, 저도 기수별로 차례로 성명 냈다는 얘기 들었구요, 내용도 좀 읽어봤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하다보니까요, 이게 정치권으로 좀 옮겨 붙었잖아요,

논란이. 특히 야당 쪽에서는 지금 KBS의 보도지침 문제를 상당히 주목하기 시작을 했지요, 아까. 더민주 우상호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청문회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당 반장/유상욱] :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야당이 주목하는게요, 지난 19일에 KBS 뉴스나인 리포트 때문인데, 성주군청 앞 사드 반대 집회에 외부 인사 단체들이 참가한 것을 확인했다. 바로 저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가고 나서요, KBS 전국기자협회가 “현장 기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위에서, 윗선에서 외부세력 개입 리포트를 제작하라’ 이런 부당 지시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성명서를 또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까지 보도 지침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야당이 가만있지 않겠죠? 들어보시죠.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 KBS 사장은 경영에 전념하고, 보도는 보도하는 기자들과 보도 책임자들에게 맡기시는 그러한 KBS의 룰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고 이것이 한 번만 더 재발되면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겠습니다.

[청와대 반장/임소리] : 그래서 지금 야3당이 방송법개정을 통해서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려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 이사회 구성이 현재는 여야 각각 7 대 4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7 대 6, 그러니까 야당인사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고치자는 건데, 뭐 이렇게 되면 중립성 시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보고있는거죠.

[앵 커] : 네, 아마 뭐 7 대 4에서 7 대 6이 되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거 같아요. 근데 뭐 어차피 다음 대선은 누가 이길지 아직 모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구요. 그런데 마침 어제 KBS 이사회가 열리려다 무산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양반장,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이에요

[국회 반장/양원보] :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부 회의에서 얘기했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야당 측 KBS 이사들이 이거 진짜 경영진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에 이사회 열어서 따져보자라고 소집요구를 딱 했는데, 여당 측 이사 7명 중에 6명이 불참을 해버린거예요. 그러니까 회의가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무산이 되버렸죠. 글썄요, 회사가 정말 저렇게 기자들이 성명까지 내고 또 녹취록 파문까지 불거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망신을 사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경영진에 대한 이런 뭐 조치 같은 게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글썄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좀.

[앵 커] : 네, 아무튼 뭐 KBS 문제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좀 연구를 많이 했다는 사람이예요, 연구라면 조금 그렇지만요. 아무튼 지금 현재 한편으로는 공영성이 의심받고 있고, 시비가 일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광고에 의존하는 그런구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가져야 된다는 건 분명한거 같구요, 이렇게 될려면은 KBS 내부의 변화도 물론 중요 하겠

지만은 정치권의 각성, 이게 상당히 시급합니다. 특히 다음 대선 후보들이 어떤 KBS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 문제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부 회의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를 다음 대선 우리가 어차피 취재를 해야 되니까,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구요, 양반장, 일단은 오늘 그 KBS 청문회 가능성이 얘기 좀 큰 거 같고,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야당 쪽의 법 개정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움직임 같이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구요, 일단 오늘은 제목은 이렇게 정할게요, ‘야당, KBS 보도지침, 청문회 할 수도’ 이렇게 좀 정하겠습니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JTBC <정치부 회의>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 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2. 피신청인은 JTBC 뉴스(<http://news.jtbc.joins.com/>) 홈페이지 뉴스면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가. 제목 : KBS 보도지침 논란 ... 야당 “청문회 갈 수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나. 내용 : 본 방송은 지난 7월 22일 <정치부 회의> 『KBS 보도지침 논란 ... 야당 “청문회 갈 수도”』 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KBS 전국기자협회의 성명서를 근거로 “성주 시위 외부 인사 참가 확인” 리포트에 보도지침이 적용됐다고 방송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본 방송이 인용한 KBS 전국기자협회 성명서는 사실관계 및 표현상 오류 등을 이유로 KBS 사내게시판에서 자진 삭제된 바 있고, “성주 외부세력 개입 리포트를 제작하라”는 KBS의 보도지침이나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으며, 해당 리포트는 정상적 업무절차에 기초하여 객관적 사실확인을 거쳐 제작·방송되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 1. 보도문

가. 제목 : <정치부 회의> KBS 보도지침 논란 ... 야당 “청문회 갈 수도” 관련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 방송은 2016. 7. 22. <정치부 회의> 프로그램의 「KBS 보도지침 논란 ... 야당 “청문회 갈 수도”」 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성주 외부세력을 부각시키라는 KBS의 보도지침과 워선의 부당한 지시는 존재하지 않았고, 리포트는 정상적인 편집회의 절차를 거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게 제작되었으며, KBS 전국기자협회의 성명서는 5시간 만에 자진 삭제되었다”라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 드라마하우스앤드케이콘텐츠허브 주식회사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정치부 회의> 기화면([http://news.jtbc.joins.com/Replay/news\\_replay.aspx?fcode=PR10010301](http://news.jtbc.joins.com/Replay/news_replay.aspx?fcode=PR10010301))에 위 제1항의 반론보도문 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2016년 9월 27일 10:00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정치부 회의>의 홈페이지 해당 <다시보기> 화면 하단의 「[국회] KBS 보도지침 논란 ... 야당 “청문회 갈 수도”」 제목 아래에 제1항의 반론보도가 상시 검색되도록 한다.

3.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 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9. 23.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JTBC - 정치부회의 프로그램 『KBS 보도지침 논란 ... 야당 “청문회 갈 수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27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 사례9

故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자택에서 압류된 작품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6서울조정1319 반론청구
신 청 인	이○○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매일방송 (MBN)
중 재 부	서울 제6중재부
접 수 일	2016. 9. 12.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반론보도)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故천경자 화백의 미인도와 관련한 위작 논란이 있고, 천 화백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그림 선물을 하였으며, 해당 미인도가 김 전 중앙정보부장의 자택에서 압류된 작품이라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故천경자 화백의 유족인 신청인은 천 화백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그림 선물을 한 사실이 없고, 미인도가 김 전 중앙정보부장의 압류품이 아닐 뿐 아니라, 압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며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패널로 참석한 미술평론가의 발언에 대해 신청인 측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을 권유했고, 양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동일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를 방송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MBN - 일요뉴스와이드 프로그램 『천경자, 이우환 화백 위작 논란』 제하의 보도

(2016년 6월 12일자)

#### ▪ 내 용

▷ 남자앵커 : 요즘 그림 위작 논란이 한창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자앵커 : 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미술평론가, 그리고 박○○

미술칼럼리스트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 남자앵커 : 어서 오십시오.
- ▷ 최○○ : 반갑습니다.
- ▷ 남자앵커 : 요즘 미술 위작 논란을 두고 “닮은 듯 다른, 다른 듯 닮은 위작 논란” 이런 얘긴데, 어떤 얘깁니까?
- ▷ 여자앵커 : 맞습니다. 세 가진데 먼저 한 번 그림으로 한 번 보시면요, 자, “닮은 듯 다른, 다른 듯 닮은”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일단, 천경자 화백 같은 경우에 생전에 어떤 작품을 두고 미인도를 두고 “내 작품 아니다”라고 하는데 남들은 “진품이다”라고 얘길 하고 있는 거구요, 미술관에서는 “천 화백의 작품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문제가 있고요.

(중략)

- ▷ 남자앵커 : 그런데 이 미인도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그 분과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관계입니까?
- ▷ 최○○ :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측 소장자인 소장처인 국립현대미술관 측의 여러분들에게 들은 얘기로는요.
- ▷ 남자앵커 : 예예.
- ▷ 최○○ : 말하자면 그, 첫째 아드님, 첫째 자녀, 아드님이 '77년도 당시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이 아드님이 아버지 때문에 아마 천경자 선생님의 첫 남편, 이혼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남편과의 사이에 낳으신 아드님인데 이 분이, 이 분들에게 뭔가 사상적인 혐의 같은 게 있어서 그 아드님이 소위 연좌제, 지금은 뭐 낫선 용어가 됐습니다만, 연좌제에 걸려서 미국으로 유학 가고자 하는 걸 못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답니다. 그래서 천경자 선생님께서 말하자면 그림을 하나 그리셔서 그 당시 안기부 부장, 책임자 이신,
- ▷ 남자앵커 : 중앙정보부장.
- ▷ 최○○ : 예, 중앙.
- ▷ 남자앵커 : 아 그러니까 천경자 화백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한테 선물을 한 것이다?
- ▷ 최○○ : 예예.
- ▷ 남자앵커 : 아, 그 얘기군요?

▷ 최○○ : “당시 아드님 좀 무사히 외국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 남자앵커 :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거죠?

▷ 최○○ : 예.

▷ 남자앵커: 알겠습니다.

(중략)

▷ 최○○ :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게서 그런, 그런 물건, 뭐 또 아시다시피 김재규라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을 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재산이 압류되는 그런 법적인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다고, 그 유래를 알고 이렇기 때문에 틀림없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작품 따로만 봐도 틀림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들려주신 그런 자료는, 아마 91년도 거인가요? 근데 어찌됐든,

▷ 남자앵커 : 올해 초 통화했다는데요.

▷ 최○○ : 그런가요?

▷ 남자앵커 : 예.

▷ 최○○ : 아, 예. 자 어찌됐든 그런 말이, 뭐 좀 조작한 자료가 아니니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것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후략)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MBN 집중진단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 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 대상보도자료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가. 제목 : “김재규 압류품 미인도 관련”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2016년 6월 12일 <엠비엔 집중진단 - 닳은 듯 다른 위작 논란> 프로그램에서 천경자 화백에 관한 미인도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 사정을 보도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1) <엠비엔 집중진단>프로그램은 “1977년 당시 천경자 화백의 큰 아들이 미국유학을 가려할 때 부친에 관련된 사상적 혐의(즉 연좌제) 때문에 유학이 어렵게 되자 천경자 화백이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부담하면서 그림 선물을 하였다”고 최○○ 평론가와 사회자의 사회멘트를 통하여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 2) <엠비엔 집중진단>프로그램은 또한 “그 무렵에 천경자 화백은 자신이 진채가 아닌 수채화풍으로 그린 작품 중 그 수준이 떨어지는 등으로 좀 버려진 작품에 대해서는 직접 바깥으로 나오서 소장자 앞에서 ‘늘 가짜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많았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여야 합니다”고 최○○ 평론가 발언을 그대로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 3) <엠비엔 집중진단>프로그램은 또한 미리 단정적으로 준비한 자막을 통하여 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김재규 / 1979년 전 박정희대통령 시해 / 천경자 ‘미인도’ 압류 /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이라는 자막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그 소장 경위를 김재규 압류품으로 영상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천경자 화백의 유족 이○○ 씨’는 다음과 같이 밝혀 왔습니다.

- 1) “천경자 화백의 큰 아들은 당시 미국 유학을 시도하거나 미국 유학을 간 사실이 없으며, 천경자 화백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그림 선물을 한 사실이 없다. 최○○ 씨는 자신이 직접 알거나 목격하지도 못한 사실을 당시 국립미술관 사람들과 일부 화랑가 및 감정가들이 만든 풍문에 의지한 허위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다”
  - 2) “당시 천경자 화백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진위 논란에 관련하여 바깥에 나가 ‘그 수준이 떨어지고 버려진 작품’에 대해 ‘늘 가짜’라고 소장자 앞에서 부인한 사실이 없다. 천경자 화백이 바깥에서 작품 소장자에게 직접 그런 진위감정을 해준 사실 자체가 없다”
  - 3) “엠비엔 방송프로그램은 김재규 압류품을 기정사실로 처리하여 그 소장경위에 대해 “김재규 / 천경자 ‘미인도’ 압류 /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이라는 자막을 보여주고 있으나, 국립현대미술관이 거론해오고 있는 미인도는 ‘당시 김재규 자택에서 나온 압류품 확인과정을 거쳐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것이 아니라, 1980년 5월 3일경에 문화공보부에서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물품무상관리전환을 해준 것일 뿐’이고 달리 김재규 소장품 압류내역이나 그 미인도 압류품의 크기 재질 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 근거도 없었다”
-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 1. 보도문

가. 제목 : 미인도 관련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6월 12일 천경자 화백에 관한 미인도 사건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천경자 화백의 유족인 장녀 이○○ 씨는, 천경자 화백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그림 선물을 한 사실이 없으며, 미인도의 김재규 소장품 압류품 출처설은 사실로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천경자 화백이 작품에 대한 진위 논란과 관련해 패소한 사실이 없고, 작품 소장자에게 직접 진위감정을 해준 사실도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6년 10월 11일까지 MBN <뉴스와이드주말> 프로그램 말미에, 제1항의 본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 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방송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3. 피신청인이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을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2항을 이행하는 경우,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10. 4.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MBN - 뉴스와이드주말 프로그램 『미인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0월 9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 사례10

귀농한 신청인의 본의와는 다르게 부농만을 꿈꾸고, 농촌에서도 인터넷강의 등을 통해 아이들 교육에 힘쓰고 있는 것처럼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6대구조정3·4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김○○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경북일보 (경북일보)
중 재 부	대구중재부
접 수 일	2016. 1. 12.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반론보도)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청년 농업인 및 귀농 사례를 보도하면서 6년 전 도시에서 귀농한 신청인이 군의 귀농정책 및 마을주민들의 도움으로 정착하였고, 향후 부농의 꿈을 키워 갈 것이며, 군 장학회의 다양한 교육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어 농촌에서도 도시의 유명입시학원 인강 및 화상영어강좌를 수강하는 등 자녀교육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귀농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보도된 데다, 부농을 바라고 귀농한 사실이 없고, 아이들에게 도시의 사교육을 수강하게 할 계획이 없음에도 귀농에 대한 신청인의 견해와 다르게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보도가 된 점은 인정되나, 성공한 귀농인을 다룬 미담기사인 점, 또 신청인이 원하는 보도문의 내용이 농업정책에 대한 주장으로 반론 성격이 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반론보도 수준에서 양 당사자가 수용할 것을 권유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재된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경북일보 - 『“사과·특작도 열심히 배워 부농의 꿈 키워가겠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3일자 15면)

## ■ 내 용

까르르~ 깔까. △△와 □□네집의 저녁은 항상 밝은 웃음꽃이 피어난다. 여기는 바로 경북 의성군 ☆☆리 ◇◇리 지중해풍으로 새 단장한 김○○·김◎◎ 씨의 집이다.

김씨 부부는 학교를 졸업한 뒤 줄곧 대구에서 직장을 다닌 전형적인 대구토박이지만 8년 전 아내의 첫 발령지인 의성에 왔다가 첫눈에 반해 귀농·귀촌하게 됐다.

처음 의성읍에서 2년간 살다가 6년 전부터 ☆☆☆리 ◇◇리 마을로 옮겨와 본격적인 농부의 길을 걷고 있다.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만 자란 김○○ 씨가 귀농·귀촌을 결정한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평생 농사라고는 모르는 그로서는 농사일이 가장 큰 걱정이었지만 마을 어르신들의 아낌없는 도움으로 이제는 제법 농사꾼다운 모습이 풍겼다.

그는 “마늘·고추·콩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직은 소득이 적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 마음은 편하고 좋다”며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먹거리이고, 농사를 지어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농사는 하면 할수록 자부심이 생긴다”고 껄껄 웃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한 밭농사에서 벗어나 사과 및 특작도 열심히 배워서 부농의 꿈을 키워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 농촌생활이 처음인데 귀농·귀촌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귀농·귀촌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거 문제인데, 기술에는 빈집은 많지만 막상 살려고 들어와 보면 살 집이 없다.

이 문제를 김○○ 마을 이장께서 잘 도와주셔서 땅·집 문제가 쉽게 해결됐다. 빈집을 구입해 뜯어내고 새 단장을 해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고 즐거워했다.

◇◇리는 70여 가구에 120여 명이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벼·마늘·고추·사과 등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곳이다. 이웃집의 일을 내 일같이 생각하며 서로 도와주는 그런 가족같은 분위기다.

이 곳은 귀농가가 무려 여덟 집이나 되어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은 젊은 마을이며, 마을주민들과 합심해서 농사일도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했다.

△ 의성지역이 귀농·귀촌 최적지라 하던데?

귀농·귀촌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북지역의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으며, 의성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가격이 큰 장점으로 작용한 데다가,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지형 및 기후적 여건

등도 한몫하고 있다.

귀농정책 및 귀농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은 물론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농업창업은 3억 원, 주택구입·신축은 5천만 원까지 2~2.7% 저리로 융자해 준다고 했다.

이에 힘입어 2011년~2014년까지 780가구(1천 454명)가 귀농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44가구(395명)가 귀농할 정도로 인기다.

#### △ 아직 자녀들이 어린데 교육문제는?

김○○ 씨 부부는 △△·□□ 두 딸이 있는데 현재 즐거워하면서 유치원에 잘 다니고 있다.

지금은 어리니까 자연과 함께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면서 사회에 나가려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사교육에 찌들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욕심이라면서도 의성군의 교육 열의가 대도시 못지 않다고 했다.

의성군 장학회(100억 원 조성)에서 의성지역의 중·고교에 미디어스페이스를 활용해 매일 아침 자습시간 및 방과 후에 강남인강반, EBS 교육방송 시청반, 화상영어반을 운영하고 있다.

강남인강반은 의성군청에서 전교생들에게 지원한 1년 수강권을 활용해 수준 높은 동영상 강의 시청, EBS 교육방송 시청은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수준별, 과목별 교과학습콘텐츠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 화상영어반은 필리핀 현지인과의 화상 통화로 컴퓨터 활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도 장학회 설립과 함께 서울·대구 등 유명입시학원 강좌로 공부할 수 있도록 무료의 인터넷이 개설 돼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 △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본격적인 ◇◇리로의 귀농 6년차인데 마을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약 5천m<sup>2</sup>(1천 500여평)에 마늘·고추·콩 등 농사를 지으며 조금씩 성장해 가는 농부다.

아직은 소득이 적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 마음은 편하고 좋다.

김○○씨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먹거리이고, 농사를 지어 먹거리를 제공 한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농사는 하면 할수록 자부심이 생긴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과 및 특작도 열심히 배워서 부농의 꿈을 키워 나가겠다고 했다.

작은 바람이 있다면, △△·□□가 건강하게 잘 자라 주고, 온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멀리 보고 큰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경북일보 특집면(15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인 “사과 특작도 열심히 배워 부농의 꿈 키워가겠다”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인터넷 경북일보(<http://www.kyongbuk.co.kr>) ‘대구, 경북, 울산’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제목과 본문이 나타나도록 하며, 48시간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의성군 ☆☆☆리 귀농인 김○○, 김◎◎ 부부 관련 정정보도

나.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11월 3일자 15면 특집면에 “사과, 특작도 열심히 배워 부농의 꿈 키워나가겠다”는 제목으로 경북 의성군의 김○○, 김◎◎ 부부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김○○, 김◎◎ 부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인터뷰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사이기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김○○, 김◎◎ 부부는 본 신문의 인터뷰 요청에 “귀농에 대해 희망적인 메세지만 전하고, 실제로 귀농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보도행태가 많아 경북일보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귀농을 하여 부농의 꿈을 꾸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이 각종 FTA와 정부의 농업 천시 정책으로 인해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역대 부농이니 6차 산업이니 하면서 농민들에게 헛된 꿈만 불어넣고 있다. 결국 농민들은 빚만 늘어난 채 농산물 가격폭락과 농자재값 인상 등 고통을 온몸으로 겪고 있다.”며 부농의 꿈을 이루기보다는 농업정책이나 우리나라의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마치 우리 부부가 대단한 교육열을 가지고 도시 못지않게 아이들을 경쟁적으로 키우겠다는 식의 기사 보도에 황당하다”며 김◎◎ 씨는 “현직 교사로서 사교육에 아이들을 내 몰기보다는 좀 더 학교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의성지역의 교육정책도 대도시의 경쟁교육을 따라가기보다는 농촌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에 더 초점을 맞추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 1. 보도문

가. 제목 : [알림] 의성군 ☆☆☆리 귀농인 김○○ 씨 부부 관련

나. 본문 : 본지는 지난 11월 3일자 15면(특집면) “사과·특작도 열심히 배워 부농의 꿈 키워 나가겠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구에서 직장을 다니다 의성군으로 귀농한 김○○·김◎◎ 부부와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본지의 ‘농어민 氣살리기’ 연중 캠페인의 일환으로 성공한 귀농인의 사례를 찾아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취재 중 김○○ 씨가 “귀농에 대해 희망적인 메세지만 전하고, 귀농의 어려운 점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으나, 본지는 김○○ 씨 부부를 모범적인 귀농 사례로 판단해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사와 관련 김○○ 씨는 “부농만을 기대하며 귀농한 것은 아니며, 최근 농산물 가격폭락, 농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 이러한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고, 교사인 아내 김◎◎ 씨는 자녀 교육과 관련 “도시 아이들 못지않게 경쟁적으로 아이를 키울 생각은 없으며, 사교육에 아이들을 내몰기보다는 학교 교육에 내실을 기해서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성군의 교육열의에 관한 내용은 의성군 장학회를 상대로 취재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2. 게재방법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6. 1. 29.자 경북일보 9면 또는 15면에 보도하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의성군 ☆☆☆리 ◇◇리 김○○·김◎◎ 씨 부부)와 동일한 크기의 2단에 걸쳐 보도한다.

### 3. 피신청인은 인터넷 경북일보에 게재된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한다.

### 4. 피신청인이 위 1, 2항(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고 임의로 수정하여 보도할 경우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피신청인이 위 1,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 2항을 이행한 경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2016. 1. 27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경북일보- 『[알림] 의성군 ☆☆리 귀농인 김○○ 씨 부부 관련』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9일자 9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 사례11

속초시가 대포항 해양호텔 신축개발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6경기조정63 반론청구
신 청 인	속초시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수원일보사 (수원일보)
중 재 부	경기중재부
접 수 일	2016. 5. 18.
처 리 결 과	합의간주 (반론보도)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속초시가 대포항 해양호텔 신축개발사업과 관련해 급조된 신생업체에 사업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당초 속초시가 토지매수자와 위 신생업체 간 매매 대금 납부 관련 계약 조건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토지매수자가 매수자격을 박탈당하여 사업권 특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속초시는 호텔부지인 공유재산 매각 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 적법하게 매수자를 선정했고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며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이 사건 조정신청은 피신청인이 연속 2회에 걸쳐 불출석하여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신청인의 청구취지대로 반론보도문이 게재됐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 조정대상보도 1

- 수원일보 - 『[포토] 5천만 원 급조회사에 2천억 사업 맡긴 속초시』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2일자 사회면)

## ■ 내 용

속초시 대포항 호텔사업 채권자 대표 임○○ 씨가 22일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속초 대포항 수익형 해양호텔 신축개발사업을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입찰 공고 직전에 급조(3월 7일 설립)된 회사에 2천억 원대 사업권을 몰아주고 있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임 대표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명쾌하게 의혹이 규명된 뒤로 청문회를 제발 연기해달라”고 호소했다.

## 조정대상보도 2

### ■ 수원일보 - 『속초시 대포항 사업, 형평성 위반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25일자 사회면)

#### ■ 내 용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매머드급 해양 개발 사업을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입찰 공고 직전인 지난 3월 7일 급조된 A법인에 2천억 원 대 사업권 특혜를 주기 위해 역차별을 한 객관적 정황이 포착되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취득토지 매각 등 관리 조례(2011. 8. 30 제정) 제12 제1항은 “매입자는 매각 대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속초시가 □□□□(주)와의 계약에서는 위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매매 대금(150억 원 상당)을 분할 없이 일괄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주) 측은 수 십억 원을 투입해 정부, 군부대, 지자체 등의 심의를 통과한 후 건축 허가를 획득하고도 속초시로부터 매수인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이다.

이 회사 측 채권단 대표 임모 씨는 “속초시의 매수인 자격 박탈로 인해 토지 매입 계약금 17억여 원도 속초시에 몰수되어 직접적 손해만 35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속초시는 2016년 3월 21일의 <공유재산 매각 입찰공고>에서는 “매입자는 매각대금을 일시 또는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자본금 5천만의 급조 회사인 A법인을 공사업체로 선정해 분할 납부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건축 허가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취득한 해양호텔건축허가마저 취소 당할 위기에 처한 □□□□(주) 측은 “만약 속초시가 A법인처럼 토지 매입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기회를 주었다면 토지 매입 대금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함과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 매입자 지위 박탈이 원인 무효임을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특혜의혹에 대해 속초시 ○○○○과 박○○ 팀장은 수원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업은 조례제정 전 환매 특약에 따른 것”이라며 “본 계약은 조례 제정 후이지만 실시 협약은 조례 제정 전이기에 조례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A법인이 급조된 회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지난 21일 공유 재산 매각 입찰공고에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동해안 최대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해 온 2천억 원 대 ‘초대형’ 해양호텔 사업을 입찰 공고 며칠 전에 급조한 자본금 5천만 원의 ‘초소형’ 회사에게 사업권을 부여해 ‘역차별’을 하였다면, 건축 허가 취소 절차 등을 마땅히 중단하고 진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주)가 추진한 대포항 해양호텔사업에 29억 원을 투자하여 채권단 대표를 맡은 ◇◇◇(주) 임△△ 대표는 지난 22일 속초시청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채권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께 탄원서를 드린 바 있다. 현재 제기된 의혹들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명쾌하게 규명된 이후로 건축허가 취소 절차를 부디 연기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속초시가 2011년에 제정된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주)에도 토지 매입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기회를 부여하였더라면 현재처럼 의혹이 제기되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속초시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의한 실체적 진실 규명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건축허가 취소를 서두른다면 속초시의 역차별로 17억여 원의 계약금 몰수와 직·간접 손해가 50여억 원에 이르는 □□□□ 측이 제기하고 있는 특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 조정대상보도 3

#### ■ 수원일보 - 『속초대포항 해양호텔 사업 다시 혼선 빛나』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8일자 사회면)

#### ■ 내 용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입찰 공고 직전에 자본금 5천만 원의 급조된 신생회사에 2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대표적 해양호텔 사업권 특혜를 주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채권단이 호텔부지에 대해 유치권 행사를 시작했다.

전임 시장 시절에 의혹을 가지고 추진하다 여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사업 자체가 좌초된 바 있는 대포항(대포동 937) 해양호텔 사업은 채권단의 유치권 행사로 말미암아 사업 자체가 다시 장기 혼선을 빚을 수 있게 되었다.

채권단 대표인 임△△ (주)◇◇◇씨앤디 대표는 “속초시가 몰수해 간 약 17억 원의 토지

매입용 계약금은 저희 돈입니다. 채무자 측이 속초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모델하우스 부지로 기초 공사를 한 부지를 채권이 회수될 때 까지 유치권을 행사를 할 계획”이라며 “채무자 측이 가지고 있는 건축허가권을 채권 회수의 일환으로 양수 받아 새로운 낙찰자와 협력해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도 차선책으로 생각 중에 있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채무자인 □□□□(주) 측은 수 십억 원을 투입해 정부, 군부대, 지자체 등의 심의를 통과한 후 건축 허가를 획득하고도 속초시로부터 매수인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이다.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수원일보(<http://www.suwon.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 되도록 한다.

####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가. 제목 : “5천만 원 급조회사에 2천억 사업 맡긴 속초시”, “속초시 대포항 사업, 형평성 위반 특혜 의혹”, “속초대포항 해양호텔 사업 다시 혼선 빚나” 관련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4월 22일, 25일 사회면 초기화면에 “5천만 원 급조회사에 2천억 사업 맡긴 속초시” 및 “속초시 대포항 사업, 형평성 위반 특혜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속초시가 특정업체에 사업권 특혜를 주고 당초 토지매수자에게 토지대금 분납기회를 주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공유재산(대포항내 호텔부지)을 매각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적법한 입찰공고를 통해 매수자를 선정한 것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없음을 밝혀왔으며, 동 부지의 계약 해지된 당초 토지매수자는 매각대금 납부규정 관련 조례제정 이전 실시협약 체결된 사항으로 조례위반에 해당되지 않음과 사업자 지위상실 및 건축법 규정 위반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절차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지난 5월 8일 사회면 초기화면에 “속초대포항 해양호텔 사업 다시 혼선 빚나”라는 제목으로 속초시 대포항 내 공유재산(토지)매각 건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채권단이 유치권 행사를 시작하여 장기혼선을 빚게 되었으며 □□□□(주) 측이 건축허가를 득하고도 매수인자격을 박탈당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공유재산(대포항 호텔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동 부지에 설치된 유치권 행사 관련 시설물은 유치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는 자가 설치한 불법시설물에 해당되며 시에서는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을 요청한 상태이며 □□□□(주)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건축법」 위반으로 인하여 건축허가는 취소절차 진행 중임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사건처리결과

합의간주

### 합의간주 이행결과

- 수원일보- 『“5천만 원 급조회사에 2천억 사업 맡긴 속초시”, “속초시 대포항 사업, 형평성 위반 특혜의혹”, “속초대포항 해양호텔 사업 다시 혼선 빛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6월 27일자 사회면)
- 내 용 - 〈조정신청취지 참조〉

## 제3장 추후보도 사례





## 제3장 추후보도 사례

### ▶ 사례12

유치원 교사들이 아동들을 학대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 건	2016서울조정288·289, 2016서울조정290·291(병합) 각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박○○ 외 3인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채널에이 (채널A, 인터넷 채널A)
중 재 부	서울 제5중재부
접 수 일	2016. 3. 3.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추후보도, 손해배상)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한 영어유치원에서 교사들이 불 꺼진 방에서 아이들에게 도깨비와 통화하라며 위협했고, CCTV의 사각지대에서 아이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가 있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하면서, 신청인들의 초상이 들어있는 CCTV 영상을 사용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추후보도 및 4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이 사건 보도 당시 피의사실에 불과한 신청인들의 혐의를 상당히 단정적으로 보도하였고, 학부모들의 피해 진술에 반해 신청인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추후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권유, 당사자 간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협의 및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채널A - 종합뉴스 프로그램 『“○○ 유치원 교사, 도깨비 방서 구타” 주장 나와』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16일자, 인터넷 채널A 1월 16일자 뉴스면) 외 4건

## ■ 내 용

- ▷ 앵 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그 난리가 났는데도 바로 옆 ○○에서 영어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를 때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CCTV의 사각 지대에 벌어진 폭행이었습니다.  
CCTV가 있는 곳에서도 버젓이 체벌이 자행됐습니다.
- ▷ 기 자 : 유치원 교사가 불이 꺼진 방으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아이에게 들이댑니다.  
두 사람이 CCTV의 사각지대로 사라진 뒤 신체 일부가 화면에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교사와 아이의 실랑이는 계속됩니다.  
당시 5살이던 이 아이는 경찰조사에서 “선생님이 도깨비 방에서 도깨비와 통화하라”며 위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사각지대에서 “선생님이 자신의 얼굴과 배를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 ▷ 목격자 유치원생 : “말 안들어서 때리는 거예요.”  
(어디를 때렸는데?) “엉덩이”  
(또 어디 했는데?) “머리, 이마”
- ▷ 기 자 : 다른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동안 벽을 보고 선 채 손을 들고 체벌을 받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CCTV도 여러 개 확인됐습니다.  
결국 학부모들은 유치원 교사 2명과 관리자 1명을 고소했습니다.
- ▷ 피해 아동 부모 : “너무 무섭다고 도깨비가 나올 것 같다고 막 우는거예요. 손바닥으로 얼굴을 이렇게 때리고 그리고 주먹으로 몸을 이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 ▷ 기 자 : 하지만 해당 교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별 세운 것은 맞지만 때리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 유치원 교사 : “선생님이 토닥토닥해준 건데, 엄마가 맞았냐고 물어보면 5세 아이들은 ‘아, 그럼 때렸네’라고 생각해서 ....”
- ▷ 기 자 : 경찰은 해당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 추후보도문을 <채널A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 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추후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 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2. 피신청인은 종합뉴스(<http://news.ichannela.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추후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추후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들이 원하는 추후보도문>

- 가. 제목 : “경기 ○○ 영어 유치원 도깨비방 아동학대 사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처분)”
  - 나. 본문 : 본 방송은 2015년 1월 16일, 22일, 24일 <종합뉴스> 프로그램 등에서 “○○ 유치원 교사, 도깨비 방서 구타”라는 등의 제목으로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검찰청 ○○지청 수사결과, 위 사건과 관련된 교사들 모두 2015년 11월 30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10,000,000원(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 가. 제목 : 경기 ○○ 영어유치원, ‘도깨비방’ 아동학대 무혐의
  - 나. 본문 : 본 방송은 2015년 1월 16일 「아동 학대 유치원 ‘도깨비방’의 실체는?’ 등 관련 보도에서 경기 ○○의 영어유치원 교사들이 불 꺼진 ‘도깨비방’에서 원생들을 체벌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해당 교사들은 모두 2015년 11월 30일자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6년 3월 30일 10:00부터 48시간 동안 <인터넷 채널A> 초기화면 주요 뉴스목록 하단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화자와 동일한 크기로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제1항의 보도문을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고, <네이버>, <다음> 등 조정대상기사가 검색 제휴(계약)된 포털사이트에도 전송하며, 피신청인의 기사 DB에 보관하여 상시 검색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16년 4월 5일까지 금 850만 원(신청인 박○○ 150만 원, 신청인 최△△·박□□ 각 200만 원, 신청인 송◇◇ 3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제2항 및 제3항을 이행한 경우,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3. 29.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인터넷 채널A - 『경기 ○○ 영어유치원, ‘도깨비방’ 아동학대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6년 3월 30일자 초기화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 사례13

모 지자체 공무원인 신청인이 산림훼손과 불법 채석을 묵인해 입건됐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 건	2016서울조정2153·2154, 2016서울조정2155·2156, 2016서울조정2219·2220(병합) 각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이○○
피 신 청 인	1. 한국방송공사 2.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 (KBS-1TV, 경인KBS-1TV, KBS미디어)
중 재 부	서울 제6중재부
접 수 일	2016. 12. 21.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추후보도)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현무암을 불법으로 채취해 조경용 석재로 팔아넘긴 일당이 체포됐고, 경찰은 주민들의 신고에도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묵인한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추후보도 및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들은 추후보도 방송 및 인터넷 게재를 수용할 수 있으나, 보도 당시 경찰서의 보도자료 및 추가적인 현장 취재를 통해 보도하였던 바, 손해배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항변하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해 추후보도를 보도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 아울러 신청인은 KBS 외에도 신청인의 혐의사실을 보도한 47개 언론사에 대해서도 추후보도를 청구했으며, 언론사들이 추후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하거나, 심리 전 추후보도문을 게재하여 취하하였으며, 이 사건 조정신청과 동일하게 모두 피해구제되어 종결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1

- 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현무암 불법 채취 ... 단속 공무원은 ‘뒷집’ 제하의 보도 (2015년 11월 6일자) 외 4건

경인KBS-1TV - 뉴스9 프로그램 『버섯 대신 현무암』 제하의 보도 (2015년 11월 6일자)

- 내 용

- ▷ 앵 커 : 버섯 키운다고 허가 받은 땅에서, 현무암 수억 원어치를 무단으로 캐내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단속 공무원은 불법 행위를 알고도 눈감아 줬습니다.
- ▷ 기 자 : 거대한 바윗덩어리 사이에서 굴착기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25톤 트럭도 동원됐습니다.  
조경용으로 인기가 좋은 현무암을 몰래 캐내는 현장입니다.  
홍 모 씨 등이 버섯을 키우고 야영장을 만들겠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내다 팔 석재를 채취한 겁니다.
- ▷ 현무암 채취 목적 주민(음성변조) : “개울 바닥하고 벽(산허리), 굴착기가 닿을 수 있는 곳은 긁어 내려서 다 채취해 간 거예요.(양이 많았나요?) 아 많았죠.”
- ▷ 기 자 : 화산 용암이 굳어 생긴 절경, 주상절리로 유명한 지역까지 여기저기 흥하게 파헤쳐졌습니다.  
이런 불법 채취는 2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주민들이 세 차례나 신고를 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둘러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다.
- ▷ 이○○(불법 채취 피의자/음성변조) : “이 동네가 현무암층이라 땅을 파면 현무암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사러오면 그냥 판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죠.”
- ▷ 기 자 : 홍 씨 등이 캐낸 현무암은 6천 톤, 시가로 10억 원어치를 넘습니다.  
아파트 등 건축 현장으로 팔려 나가 조경석으로 쓰였습니다.
- ▷ 김○○(○○경찰서 ○○팀장) : “현무암이 조경용으로 고가에 거래되고 멋있기 때문에 별장이나 이런 곳에 조경용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 ▷ 기 자 : 경찰은 홍 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조정대상보도 2

- KBS미디어 - 『조경용 현무암 6천 톤 불법 채석 일당·묵인 공무원 적발』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6일자 사회면)

### ■ 내 용

조경용 석재로 인기 있는 현무암을 대량으로 불법 채석해 팔아치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경찰서는 현무암을 불법으로 캐내 조경용 석재로 팔아넘긴 혐의로 홍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산지 훼손을 묵인해 준 혐의 등으로 ○○군 공무원 이모 씨 등 17명을 불구속입건 했습니다.

홍 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군 ○○읍 ○○리 야산에서 현무암 6천 톤, 시가 6억 원 어치를 허가 없이 캐내 조경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홍 씨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했지만, ○○군 공무원 이 씨 등이 이를 묵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불법채취된 현무암은 전국 각지의 조경업자에게 넘어가 SH공사의 보금자리 주택지구 등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 1은 아래 추후보도문을 KBS-TV <뉴스12>외 4개 프로그램 및 경인KBS-1TV <뉴스9>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추후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2. 피신청인 2는 KBS뉴스(<http://news.kbs.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추후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추후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이 원하는 추후보도문〉

- 가. 제목 : “현무암 6,000톤 불법 채취 … 공무원이 목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 나. 본문 : 본 방송은 2015. 11. 6.(뉴스 12)의 5개 프로그램에서 “현무암 6,000톤 불법채취 … 공무원이 뒷짐”이라는 제목으로 “주민들이 산림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세 차례나 신고 했지만 공무원 이 씨 등이 이를 눈감아줬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군청 공무원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은 산지관리법 위반을 인지하여 총 4차례에 걸쳐 사법처리하였으며,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서도 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군 공무원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이 현무암 불법채취를 목인한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각 1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 가. 제목 : 현무암 불법 채취 목인 공무원 무혐의
- 나. 본문 : 본 방송은 2015년 11월 현무암 불법 채취 적발 관련 보도에서 산지훼손을 목인해준 혐의 등으로 ○○군청 공무원 이 모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는 내용을 보도 했습니다.
- 그러나 의정부지검 수사결과, 이 모 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지난해 10월 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 한국방송공사(KBS)는 제1항의 보도문을 2017년 1월 11일까지 KBS-1TV <뉴스7> 및 경인KBS-1TV <뉴스9> 프로그램에서 보도하되,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며,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고,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3. 피신청인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는 제1항의 보도문을 2017년 1월 11일까지 KBS NEWS 홈페이지(<http://news.kbs.co.kr>)에 게시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4. 피신청인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는 2017년 1월 11일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제3항의 사항을 전송한다.
5. 피신청인들이 제2항~제4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각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6.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제2항~제4항을 모두 이행하는 경우, 이 사건의 각 조정대상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들 및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1. 4.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KBS-1TV - 뉴스7 프로그램 및 경인KBS-1TV - 뉴스9 프로그램 『현무암 불법 채취 목인 공무원 무혐의』 제하의 각 보도 (2017년 1월 6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제4장 손해배상 사례





## 제4장 손해배상 사례

### ▶ 사례14

전단 배포 중인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게재해 피해를 입었고, 이를 두고 불법 호객 행위를 한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6서울조정388·389, 2016서울조정390·391(병합) 각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김○○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중 재 부	서울 제2중재부
접 수 일	2016. 3. 16.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반론보도, 손해배상)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대학로에서 공연 티켓을 판매하는 호객행위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공연 전단을 배포하고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해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진 촬영 및 보도에 동의한 적이 없고, 호객행위를 한 것이 아닌데 마치 불법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반론보도 및 5,000,000원의 손해 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되더라도 신청인을 촬영 및 보도해야 할 필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자, 중재부는 신청인의 전단배포행위가 호객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반론보도 게재 및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모자이크처리하고, 손해 배상금 1,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 조정대상보도

- 중앙일보 - 『“혜화역 2번 출구가 노다지 ... 대학로 배우보다 더 벌어요”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24일자 문화면, 온라인 중앙일보 2월 24일자 문화면)

- 내 용

주말에 서울 대학로를 훑 나가봤는지.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를 나갈 때면 어김없이 마주치는 이가 있다. 속칭 ‘삐끼’라 불리는 호객꾼이다.

연극·뮤지컬 리스트가 빼곡한 책받침을 들고는 “배꼽 빠져요”라며 옷깃을 붙잡는다. 때론 옛되고 간혹 꼴렁댄다. “삐끼가 대학로 물 흐른다”라며 술한 연극인들이 목청을 높이지만 잠초갈다. 단속을 비웃으며 활개친다. 그래서 “뒤에 조폭이 있다” “점조직이다” 등 소문만 무성하다.

과연 대학로 삐끼는 누구인가. 그 세계를 알아보려고 삐끼 경력 5년의 박모 씨를 접촉했다. “이 바닥 좁다. 나라는 김새라도 보이면 당장 떠야한다”며 익명을 요구했다. 인터뷰는 18일과 19일 두 번 진행됐다.

질의 : 단도직입적으로 삐끼는 누구인가.

응답 : “삐끼라는 말 거북하다. ‘전단팀’이라고 해달라. 제작사마다 기획팀·마케팅팀 있지 않나. 그런 업무처럼 공연 소개하는 전단지 만들고 돌리는 일을 한다. 홍보 직원인 셈이다. 단지 그 일을 책상에 있지만 앉고 거리로 나와 적극적으로 한다. 가장 왕성하게 전단팀을 운영하는 곳은 세 군데, M·S·Y 제작사다.”

질의 : 전단팀은 어떻게 구성되나.

응답 : “제작사에 소속되며 피라미드 구조다. 실장 한명에 팀장 서너명, 각 팀장 아래에 5~10명의 ‘알바’가 있다. 주말엔 고교생 알바가 많다. 전단팀은 비수기 때는 20명, 연말·방학 등 성수기 때는 40명 정도 된다. 크리스마스 이브 같은 대목엔 팀별로 80명까지 풀린다.”

질의 : 벌이는 어떤가.

응답 : “기본급 없다. 손님 물어오는 데로 돈 번다. 전단팀 판매액중 35~40%가 뭇으로 떨어진다. 티켓 한장당 실장 5%, 팀장 10%, 알바 20~25% 할당된다. 알바는 100만 원 안팎, 실·팀장은 200만~300만 원 번다. 수입은 웬만한 대학로 배우보다 낫다. 현장까지 직접 뛰는 에이스급 실·팀장은 월 500만 원 찍는다. 4, 5년 전 경기 좋을 때는 월 1,000만 원 넘긴 이도 있었다.”

질의 : 구역은 정해져 있나.

응답 : “가장 인기있는 구간은 다 함께 들어가고, 나머지는 독점 방식이다. 혜화역 3번 출구는 안 간다. 우리끼리 ‘미라 나온다’고 한다. 서울대병원 환자가 많아서다. 4번 출구도 별로 재미 못 본다. 노점상이 많아 시끄럽다. 노다지는 2번 출구다. 출구 바로 앞쪽은 S사만 들어간다. 골목길도 구간별로 주인이 있다.”

질의 : “빼끼가 순위 조작한다”고 원성이 높다.

응답 : “예전엔 했다. 지금은 안 한다. 이런 식이었다. 예매사이트 순위 화면을 캡처해서 인쇄한다. 그걸 코팅해서 책받침 만드는데 우리 공연을 가짜로 집어넣는다. 하나는 3위, 다른 하나는 7, 8위로 한다. 1, 2위는 너무 티 나서 안 한다. 그걸 보여주며 손님 꼬드킨다. 근데 모바일 시대 아닌가. 허위 순위 얘기하면 바로 검색한다. 약발 떨어졌다.”

질의 : 뒤에 조폭이 있다는 소문이다.

응답 : “10년 전에는 그랬다고 한다. 동네 양아치면 몰라도 이런 푼돈을 놓고 어떤 주먹이 ‘쪽 팔리게’ 들어오겠나. 요즘 경기 정말 안 좋다. 그나마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게 ‘작품은 후져도 빼끼한테 사면 싸다’는 인식 덕이었다. 근데 최근엔 저가 연극이 수두룩하다. 1만 원 밑으로 팔아선 우리도 남는 게 없다.”

질의 : 대학로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주범 아닌가.

응답 : “우리가 하는 건 오프라인 영업이다. 영업은 전쟁이다. 전쟁터에서 무슨 반칙 운운인가. 연극 흥행 안 되면 핑계 필요하니, 그걸 빼끼한테 돌리는 거다. 그렇게 욕하면서 ‘표 팔아달라’고 뒤로 제안하는 건 또 뭐가. 메이저 제작사도 비수기 때는 요청 들어온다. M·S·Y가 빼끼 영업한다는 건 얼추 소문 나 있다. 관공서도 눈치채고 있다. 그럼에도 생존하는 데엔 모종의 이유가 있지 않겠나.”

대학로 빼끼 역사는 199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BS ‘개그콘서트’의 이름을 빌린 짝퉁 코믹극이 호객 행위에 적극적이었다. “지나가는 행인 끌어들이는 것도 일종의 연습”이라며 출연진이 직접 거리로 나서기도 했다. 특정 표시가 된 전단지들 돌려 회수 양만큼 돈을 주었다.

2000년대 중반 개그 공연에 관객이 물리면서 빼끼간 다툼도 빈번해졌다. 구역을 둘러싼 몸싸움과 신경전이 치열했다. 한때는 인근 건달들도 관여했다는 후문이다. 대학로 빼끼 경력 10여년의 정모 씨는 “우리끼리 다툼은 할 망정 선을 넘진 않았다”고 전했다.

그나마 관대하던 대학로 연극인들이 최근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데엔 뼈끼문화가 변질됐다는 우려가 있다. 단지 공연을 알리며 관객을 모집하는 수위를 넘어, 순위조작·허위정보·기만행위 등으로 다른 공연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다고 보고 있다. 명백한 영업방해라는 인식이다.

현재 호객행위는 1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경범죄다. 한국연극협회 정대경 이사장은 “기업화된 뼈끼 연극 제작사는 폐업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연극 물어보면 “1진 배우 다 지방 갔다” 악평

손님 낚는 4단계 기술

멀쩡히 걸어가던 행인을 어떻게 허름한 극장 안으로 데려올까. 대학로 뼈끼의 손님 낚는 4단계 기술은 치밀하다.

1. 포착하라. 무턱대고 달려 드는 건 하수다. 관람 의사가 있는지를 포착해내는 게 첫 단추다. ‘오랜만에 대학로 나왔는데 연극이라도 한번 볼까’라는 뜻이 있다면 서성이게 마련이다. 무언가 찾는 듯한 떨리는 눈매를 간파하라. 그리곤 슬며시 다가간다. “뭐 있는데요?”라고 말하는 이라면 ‘호객’이다. 사전 정보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덤터기를 씌울 수도 있다.
2. 흔들어라. 요즘 관객 그리 어수룩하지 않다. 최근 인기 공연이 무엇인지 얼추 안다. “보고 싶은 거 저한테 말씀하세요. 다 있어요, 싸게 드릴게요”라고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다. 손님이 다른 작품을 거론하면 멈칫하며 탄식을 내신다. 얼굴을 일그러뜨린다. “왜요?”라고 물어오면 “아니요, 그냥 ...”이라며 시선을 회피한다.
3. 악담하라. 기존 선택에 균열을 냈다면 이제 확인 사살이다. 악평을 퍼붓는다. 작품별 매뉴얼이 있다. ‘옥탑방 고양이’를 보고 싶어하면 “남자들끼리 뽀뽀해, 그런 취향이서?”라고 한다. ‘죽여주는 이야기’에 대해선 “아니 우울하게 자살하는 애기 좋아해요?”라고 고개를 젓는다. “1진 배우는 다 지방가서 오늘은 처음 서는 신인들이데 ...”도 단골 레퍼토리다.
4. 연기하라. 마지막 필살기다. 예매해주겠다며 전화 건다. “실장님, 저예요.” 물론 가짜다. “아, 자리 없어요, 기둥 뒤?” 이쯤에서 손님은 반쯤 포기한다. 그래도 고집부리면 또 전화거는 척을 한다. “보조석밖에 없대구요? 반 밖에 안보인다고 ...” 결국 손님 입에서 “그럼 뭐가 볼 만 해요?”라는 말이 나온다. 그제서야 “이거 괜찮죠”라며 자신의 작품을 내민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중앙일보 문화면에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반론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경력 5년 ‘빼끼’가 털어놓는 뒷얘기”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온라인 중앙일보(<http://joongang.joins.com/>)의 홈페이지 문화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에 아래의 반론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 가. 제목 : “혜화역 2번 출구가 노다지 ... 대학로 배우보다 더 벌어요” 관련 반론보도문
- 나.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2월 24일자 문화면에 “혜화역 2번 출구가 노다지 ... 대학로 배우보다 더 벌어요”라는 제목으로 사진에 보도된 사람이 일명 빼끼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신청인 측에서는 진단지를 배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사람들을 붙잡고 강매하는 방식의 호객 행위를 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 주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22면>에 [별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제목의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동일하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중앙일보

홈페이지 <문화면> 초기화면 기사목록에 중간 이상 부분에 [별지] 반론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또한 조정대상기사 (<http://news.joins.com/article/19619616>) 및 (<http://news.joins.com/article/19619383>) 본문 하단에도 [별지]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네이버>, <다음> 등 조정대상기사가 검색 제휴된 포털사이트에도 전송한다. [별지] 반론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 활자체는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각각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한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5. 피신청인이 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을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6.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이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3. 29.

## [별지]

가. 제목 : 『대학로 삐끼』 관련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지는 지난 2016년 3월 10일자 『혜화역 2번 출구가 노다지 ... 대학로 배우보다 더 벌어요』 제목의 기사에서 M제작사가 삐끼 영업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호객행위를 한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M제작사는 “전단지를 배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적으로 호객행위를 한 적은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피신청인 동의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 중앙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15일자 문화면, 온라인 중앙일보 2016년 4월 15일자 문화면)
- 내 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참조〉
- 손해배상금 1,500,000원 지급

## ▶ 사례15

자살자를 수치화한 신청인의 웹툰을 보도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권을 침해했다.

사 건	2016서울조정1966, 2016서울조정1967(병합) 각 손해청구
신 청 인	송○○
피 신 청 인	1. 주식회사 매일방송 2. 주식회사 매경닷컴 (MBN, 인터넷 MBN)
중 재 부	서울 제3중재부
접 수 일	2016. 11. 21.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손해배상)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자살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하면서 도입부에 온라인에서 주목을 끈 웹툰이라며 자살자를 수치화한 그림을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의 웹툰을 동의 없이 보도했다며 4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저작권권 침해행위라고 판단했고, 피신청인에게 저작권료 개념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을 권유했으며,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금 1,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MBN - 김주하의 뉴스초점 프로그램 『‘나’를 사랑합니다』 제하의 보도 (2016년 9월 9일자, 인터넷 MBN 9월 19일자 뉴스면)
- 내 용



▷ 앵 커 : 작년 5월, 온라인에서 주목을 끈 웹툰 하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 2시간에 3명, 20시간 동안엔 고등학교 한 반 전체인 30명이 사라집니다. 24시간이 지나면 고속버스 탑승객 40명, 그리고 한 달이면 300세대 아파트 주민 1,200명이 사라지지요.

무슨 공포영화 같은 이 수치는 2013년에 자살한 14,427명을 수치화한 겁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실텐데, 2003년 이후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지키고 있지요. 2년 전 수치로 비교해도 인구 10만 명 당 27.3명, OECD 평균인 12명의 2배가 넘습니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살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난 2005년, 유명 여배우가 자살한 이후 한 달간 자살자는 총 1,160명. 그 전달에 비해 425명이 늘었고, 2004년 한 공직자와 기업인이 자살을 한 그 달에도 4,095명으로 평소보다 751명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1994년부터 12년 간 조사해 보니, 유명인이 사망하면 평소보다 월 평균 137명이 더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걸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죠. (후략)

### 조정신청취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1은 3,000,000원을, 피신청인 2는 1,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 주식회사 매일방송(MBN)은 신청인에게 2017년 1월 25일까지 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 주식회사 매경닷컴(인터넷 MBN)은 신청인에게 2017년 1월 25일까지 금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만일 피신청인들이 해당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위 내용과 동일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1. 17.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500,000원 지급

## ▶ 사례16

보육교사인 신청인이 아이들에게 박치기를 시켜 상처를 입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6서울조정635·636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정○○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SBS-TV)
중 재 부	서울 제8중재부
접 수 일	2016. 4. 18.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손해배상)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치기를 시켜 아동의 이마에 멍이 들었다고 보도했고, 보육교사가 보낸 해명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을 노출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아동은 교사의 박치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된 사건 이전에 가정에서 놀다가 상처가 난 것이었고, 훈육은 하되 체벌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임에도 마치 신청인의 반론인 듯 보도했다며 정정보도 및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박치기와 멍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취재하지 않았고, 신청인과 학부모 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마치 이번 박치기 논란에 대한 해명인 것처럼 인식되게끔 편집되었다며 피신청인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신청인도 보도에 신청인의 실명이 노출된 점에 대해 과실을 인정하였으며, 신청인이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보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어 현 시점에서는 손해배상 지급만을 원하여, 양 당사자간 손해배상금 1,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SBS-TV -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어린이집 아동학대』 제하의 보도 (2016년 4월 14일자)

■ 내 용

▷ 기 자 : 어린이집에서 또 다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믿고 맡겼던 어린이집에서 진행된 아동 학대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 ▷ 피해아동어머니 : 손을 펴더니 자기 머리를 되게 세게 때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때린거야?) 그랬더니 응 엄마 이렇게 때렸는데 참았어. 안 울었어.  
(학부모가 촬영한 영상)
- ▷ 학부모 : 선생님한테 어디 맞았어.
- ▷ 엄 마 : 그렇게 맞았어.
- ▷ 아 이 : 팔을 이렇게 잡더니 확 밀었어. 말 안 듣는다고.
- ▷ 기 자 : 피해아동은 한명이 아니라는데요.  
한 아이는 어른만 보면 불안해하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 ▷ 앵 커 : 후유증이 늘 큰 문제거든요.
- ▷ 학부모 : 괜찮아 잘못된 거 아닌데 왜 그래 잘못된 거 아냐.
- ▷ 학부모 : 집에 오면 (힘든 마음을) 다 폭발하는 거 같아요.
- ▷ 리포터 : 이런 아이의 모습에 학부모들은 역장이 무너지는데요.
- ▷ 피해아동어머니 : CCTV를 보고 나면 그 충격이 너무 커서 CCTV를 보고 다음날 하혈을 시작했거든요.
- ▷ 자 막 : CCTV에 담긴 충격적인 장면 박치기를 시키고 있는 보육교사의 모습.  
(그림방송)
- ▷ 기 자 :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치기를 시킨 보육교사.
- ▷ 앵 커 : 교사라고 할 수 없는 거 같은데요.
- ▷ 박치기 피해아동어머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서 아이를 잡아끌어서 자기 힘으로 다시 우리 아이랑 박치기를 시켜요. 선생님이 머리를 맞닿은 그 상태 그대로 아이들이 무릎을 꿇어요.
- ▷ 앵 커 : 말이 되나요. 저게.
- ▷ 자 막 : CCTV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학부모.
- ▷ 기 자 : 보육교사의 이어진 태도에 학부모는 더욱 할 말을 잃었는데요.
- ▷ 학부모 : 자기 발밑에 애들 둘을 그렇게 벌을 세워놓고 보육교사는 다리 꼬고 앉아서 간식으로 나온 잔치국수 국물을 마시더라고요.
- ▷ 기 자 : 친구와 여러 번 머리를 부딪친 아이의 머리에는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훈육은 해도 체벌은 절대하지 않는다고 학대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 앵 커 : 머리를 부딪친 것은 체벌이 아닌가보죠.
- ▷ 기 자 : 해당어린이집을 찾아가 보니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 ▷ 어린이집 관계자 : 더 잘 아시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을 왜 자꾸 와서 찌르냐고요.
- ▷ 기 자 : 아동학대를 한 보육교사는 현재 어린이집을 그만둔 상태고 피해아동들 역시 어린이집을 옮긴 상태입니다.  
학부모들은 6개월치 CCTV 영상까지 요청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답답한 상황.
- ▷ 경 찰 : 보육교사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출석을 연기했어요. 보육교사가 임신중이에요. 그래서 조사가 늦어지고 있으니까 일단 나가세요.
- ▷ 학부모 :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하나고요.
- ▷ 기 자 : 피해아동 학부모들은 모든 것이 억울할 따름입니다.
- ▷ 피해학부모 :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전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 정정보도문을 SBS-TV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 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 가. 제목 : 아동학대 보육교사 방송 관련 정정보도문
- 나. 본문 : 본 방송(모닝와이드)은 지난 4월 14일자 모닝와이드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라는 제목으로 심각한 아동학대로 아이들을 상처 입히고 해당 보육교사는 훈육은 하되 체벌은 안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방송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하는 중에 보육교사가 박치기를 시켜 아이들에게 박치기로 인한 상처가 났다고 방송을 하였지만 문제가 되는 사건 전에 해당 아이의 어머니가 할머니네서 놀다가 이마에 상처가 나있다고 어린이집에 통화한 기록이 있었고 당일 이마에 상처가 있는 사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박치기를 시켜 이마에 상처가 난 것이 아닌 그 전부터 있던

상처를 마치 확대행위를 행해 상처가 난 것이라고 방송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보육교사는 훈육은 하되 체벌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방송이 되었는데 해당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는 메시지이며, 사건이 있기 거의 1년 전 문자를 이번 사건에 대해 보육교사의 해명 메시지인 척 방송을 내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박치기를 시켜 이마에 상처가 난 사실 또한 그 전부터 있던 상처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제작한 외주제작사 주식회사 ○○○과 연대하여 아래 신청인 계좌로 2016. 5. 27.(금) 18:00까지 금 15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 등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2016. 5. 20.) 이후 <SBS-TV> 및 계열사를 통해 방송되는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신청인에 관한 내용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제작에 참여한 외주제작사 주식회사 ○○○ 및 소속 임직원 (PD, 작가 포함)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5. 20.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500,000원 지급

## ▶ 사례17

병원에서 의료기록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신청인의 모습과 음성을 동의 없이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6경기조정131 손배청구
신 청 인	김○○
피 신 청 인	오비에스 경인티브이 주식회사 (OBS경인TV)
중 재 부	경기중재부
접 수 일	2016. 10. 21.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손해배상)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실종된 가족을 추적하는 르포를 보도하면서 해당 실종자가 치료받았던 병원 관계자인 신청인에게 실종자의 의료기록을 문의하는 내용을 모자이크 처리 및 음성변조 없이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촬영 및 녹화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고, 보도에 동의한 바 없으며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촬영 동의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동의의 존부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피신청인이 동의의 존부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권고하였다. 이에 당사자 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OBS경인TV - 추적르포 프로그램 『사라진 가족 4』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31일자)

#### ■ 내 용

- ▷ 나레이션 : 실종 당시 어머니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 ▷ 남 자 : 어떤 업무 보시려고 하세요?
- ▷ 기 자 : 어머니께서 실종되셔가지고 찾으려고 진단서가 필요해서요.
- ▷ 신청인 : 진단서를 받으시려고요?
- ▷ 남 자 : 네
- ▷ 나레이션 : 이렇게 어머니의 실종을 확인할 때마다 막내아들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 ▷ 남 자 : (진단서를 보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을까요?
- ▷ 신청인 : 이거(실종자 상태)는 나온 그대로세요. 알츠하이머 치매 있으시고 고혈압 있으시고 내용 그대로예요. (후략)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2016년 11월 10일까지 신청인에게 1,5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도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이 제1항의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 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소사건 또는 소송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묻지 아니 한다.

2016. 11. 3.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500,000원 지급

## 제5장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사례





## 제5장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사례

### ▶ 사례18

고등학생인 신청인이 수행평가에서 특혜를 받았으며 다른 학생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6서울조정972·973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송○○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닷컴)
중 재 부	서울 제3중재부
접 수 일	2016. 7. 1.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지역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특정 학생에게 수행평가에서 특혜를 줬고, 해당 학생이 다른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수차례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수행평가 방식과 관련하여 다른 학생들의 동의 하에 진행되어 특혜나 차별이 없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취재 없이 다른 학생들의 진술에만 근거해 보도했다며 정정보도 및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보도의 분량 및 횟수, 내용이 이례적이고, 미성년자 보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신청인이 특정되어 피해가 인정되나, 피해구제방법으로서 보도문 게재보다 조정대상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권유 하였고, 신청인은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과 함께 향후 보도에 신청인을 특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피신청인도 신청인의 신원 특정의 문제를 인정하고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1

- 아시아경제닷컴 - 『수행평가 교사 입맛대로 차별 적용’ 대학 입시 비리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5일자 사회면)

- 내 용

전남 ○○고등학교가 수행평가지험에서 교사의 입맛대로 특정 학생에게 높은 성적을 줘 피해를 봤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제기돼 대학입시 비리 논란에 휘말렸다.

더욱이 이 학교는 지난해 2학기 특기자 선발전에서 8등 S여학생을 특기자로 선정하기 위해 1~2등을 기록한 K, J학생을 1학기 징계사유로 탈락시켜 이중 처벌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번에도 교사의 입맛대로 높은 점수를 받은 당사자는 8등 특기생 S여학생이다.

5일 ○○고 6명의 여학생은 진술서를 통해 “2015년 12월 수행평가 당시 P감독이 내준 과제를 잘 수행했는데도 자신들보다 더 못한 S학생에게 부상투혼이라는 주장으로 점수를 많이 줬다”며 “아이언 평가에서 S학생은 드라이버로, 나머지 학생은 7번 아이언으로 수행평가를 진행했다”면서 특혜를 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교육부가 올해 1학기부터 수행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교육부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없이 졸속으로 행정을 추진했다는 비난도 제기될 것으로 보여 교육부의 대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인권침해, 징계조작, 특기생 바뀌치기로 논란을 빚고 있는 ○○고등학교를 상대로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이번 수행평가 특혜주장은 징계조작, 특기생 바뀌치기와 연계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도교육청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낼지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학교 학생들의 피해주장은 모두가 한 결 같이 동일했다.

2015년 12월 2학기 경기과 16명의 학생이 전체 참가한 가운데 이 학교연습장에서 수행평가가 진행됐다.

P감독이 진행한 아이언 수행평가는 100점 만점에 50점은 기본 점수이고 공 하나에 10점씩 5개를 친다. P감독은 우측 탑과 가운데 철탑사이로 공을 쳐라고 학생들에게 과제를 지시했다. 거리까지 평가했다.

B학생은 “분명 우측 탑과 가운데 철탑사이의 방향성과 거리까지 본다고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5개 모두 잘 친 저와 C친구는 75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학생은 이어 “이 때까지 수행평가 점수가 90점 밑으로 내려가 본적이 없었는데 공 5개가

모두 선생님이 내준 과제에 완벽히 들어맞았는데 생각보다 낮은 점수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으로 수행평가를 시작한 S학생이 문제였다. B학생은 “S학생이 손 깍스를 하고 있던 것을 병원에서 풀고 왔다”면서 “연습을 안 해서 그런지 S학생은 사방팔방 방향성이 없는 데다 거리도 짧아 어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었지만 부상투혼이라는 특혜를 받아 80점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수행평가는 누구의 편의를 봐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P감독에게 따져 물었지만 P감독은 ‘자꾸 그러면 태도점수를 깎는다’고 말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P감독이 S학생의 수행평가점수를 더 많이 주기 위해 B양을 압박한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B학생은 애초에 우리 학교는 다쳐서 점수를 더 준 사실도 없고 못 치는 사람에게 핸디캡을 준적도 없었다”며 “K프로도 P프로도 비정상적으로 S학생에게 점수를 많이 줬다”고 밝혔다. K프로는 계약직으로 3년 간 근무해왔고 현재는 연장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에 근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P프로(P감독 제자)도 수행평가 때 S학생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P프로는 7번 아이언 10개 중 5개가 앞 망에 올라가야 100점이다. 그리고 드라이버는 뒷 망을 맞으면 100점을 준다는 것.

J학생에 따르면 “S학생과 나에게는 초보자라는 이유로 7번 아이언 대신 드라이버를 치게 했다”며 “그래서 1학년 P프로의 과목 수행평가를 잘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다.

또한 J학생이 2학년 P감독 과목 수행평가 때 일이다.

P감독은 아이언과 드라이버를 쳐서 방향과 거리 임팩트를 평가한다고 했다. 그런데 “B학생이 S학생보다 잘 쳤는데 S학생 수행평가 점수가 더 높았다”며 “그 이유는 부상투혼 때문에 태도가 좋아 점수를 더 줬다”고 J학생은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J학생은 “K프로가 진행하는 수행평가 때는 학생들이 서로에게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학생들이 점수를 주면 K프로는 몇 명의 학생들한테 가산점을 줬고, C프로는 기회를 더 준 학생들도 있었고 가산점을 더 준 학생들도 있어 수행평가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행평가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은 B학생을 포함, 5명에 이르고 피해

자체를 모르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고 전 감독 A씨는 최근 기자와 만나 “학생들이 하나 둘 이 같은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 시작했고 그 때부터는 학교의 수행평가 조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수행평가 조작은 대학입시 비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P감독은 “똑같이 학생들 보는 앞에서 점수를 기재했기 때문에 그럴 순 없다”며 “S학생한테 그런(특혜를 준) 적 없다”고 해명했다.

P감독은 이어 “(그 당시)남학생들이 다 봤었기 때문에 남학생들한테 물어보라”며 “개인적으로 특혜를 준 것도 없는데 그 때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하고 이제 와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P감독은 또 “‘태도점수 깎아 버린다.’는 말은 한 적도 없다”면서 “없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왜 여학생들 말만 듣고 ... 남학생들도 같이 봤는데 남학생들한테도 물어보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피해를 주장한 학생하고 대질해달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 달라”며 “절대 한 적이 없고 공평하게 했다”고 밝혔다.

## 조정대상보도 2

### ■ 아시아경제닷컴 - 『학교 기숙사서 2년 간 학교폭력 발생 드러나 ‘충격’』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5일자 사회면) 외 9건

#### ■ 내 용

전남 ○○고등학교 내 기숙사에서 2년여 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전남도교육감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K학생과 J학생은 “S학생(현 학생회장)은 같은 반 한 학생을 1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며 “이 사실은 골프감독이자 기숙사 사감인 P감독이 알고 있었는데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는 피해학생을 보호조차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는 기숙사 같은 방을 배정해 줬다”고 말했다.

학교의 이 같은 조치로 피해학생은 S학생회장에게 2년여 간 괴롭힘을 당해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학생 학부모는 학교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지난 3월 31일 학교에서 가해자 S학생회장과 학부모,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만나 원만한 합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S학생회장은 이 피해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해 피해학생이 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학생들은 “이 문제도 학교 측은 사실을 인지했으나 증거가 없어 학폭위를 개최할 수 없다는 변명을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다. 서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하더라도 학폭위는 개최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학교 측은 피·가해자 간 합의가 있었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해 학교 사안으로 종결했다.

이 같은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장은 최근 사감교사를 맡았던 P감독에게 이 같은 사실을 물어 봤지만 P감독은 “그런 피해사실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학교장은 “피해학생을 면담했더니 “어렵다. 힘들다”는 이야기를 P감독에게 했었던 것 같다”며 “괴롭힘을 당하거나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학교장은 이어 “P감독과 면담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들 일이고 해서 그냥 지나쳤던 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듯 보였다.

이에 대해 피해학부모는 “P감독에게 피해사실을 분명히 알렸었다”며 “그러나 이 같은 피해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아시아경제(<http://www.asiae.co.kr/>)의 홈페이지 뉴스면의 초기화면에 <별지>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통상의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의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이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1>

- 가. 제목 : 「“수행평가 교사 입맛대로 차별 적용” 대학입시 비리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 나.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4월 5일자 사회면에 「“수행평가 교사 입맛대로 차별 적용” 대학입시 비리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5일 ○○고 6명의 여학생은 진술서를 통해 “2015년 12월

수행평가 당시 P감독이 내준 과제를 잘 수행했는데도 자신들보다 더 못한 S학생에게 부상 투혼이라는 주장으로 점수를 많이 줬다”며 “아이언 평가에서 S학생은 드라이버로, 나머지 학생은 7번 아이언으로 수행평가를 진행했다”면서 특혜를 줬다고 밝혔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전라남도 교육청의 전수조사 끝에 기사에서 언급된 2015년 12월경 수행평가에서 ‘S학생’에게 다른 학생에 비하여 부당하게 점수를 많이 준 사실이 없고 올바르게 채점하였으며, 2014년 6월경 ‘아이언 평가’에서는 ‘S학생’ 외에 추가로 2명의 학생까지도 다른 모든 학생의 동의를 얻어 드라이버채로 수행평가를 진행하였는 바, 각 수행평가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2〉

가. 제목 : 「학교 기숙사서 2년 간 학교폭력 발생 드러나 “충격”」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5월 25일자 사회면에 「“수행평가 교사 입맛대로 차별 적용” 대학입시 비리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23일 전남도교육감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K학생과 J학생은 “S학생(현 학생회장)은 같은 반 한 학생을 1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며 “이 사실은 골프감독이자 기숙사 사감인 P감독이 알고 있었는데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는 이 피해학생을 보호조차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는 기숙사 같은 방을 배정해 줬다”고 말했다. 학교의 이 같은 조치로 피해학생은 S학생회장에게 2년여 간 괴롭힘을 당해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학생 학부모는 학교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지난 3월31일 학교에서 가해자 S학생회장과 학부모,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만나 원만한 합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S학생회장은 이 피해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해 피해학생이 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해당 기사에서 ‘S학생’으로 표기된 학생이 같은 반 학생인 피해학생을 2년여 간 괴롭힌 사실이 없고, ‘S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이 원만한 합의를 한 이후에 ‘S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3〉

가. 제목 : 「[아버지의 눈물②]학교폭력 피해 숨기고 가슴앓이 해 온 피해 학생의 사연」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6월 20일자 사회면에 「[아버지의 눈물②]학교폭력 피해 숨기고 가슴앓이 해 온 피해 학생의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숨기고 2년여 간 가슴앓이 해 온 피해 학생이 기숙사에서 강요에 못이겨 온갖 잡일을 해오며 피해를 봐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가해학생 B는 피해학생 A와 은행에 가는 도중 “C학생에게 말하지 말라”고 명령조로 말했다. 만약에 C학생과 말하면 “기숙사 방문을 잠근다고 협박했다”는 것. B학생과 C학생은 서로 다툼 뒤였다. A학생은 다른 친구에게 이 같은 말을 전했다. B학생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A학생 앞에서 핸드폰을 바닥으로 던지면서 “XXX이 진짜”라며 욕을 했다. (-중략-) 또한 B학생은 A학생이 집에 가는 날 학교버스 자리를 무조건 앞쪽으로 맡아 달라고 했다. A학생은 앞쪽 자리는 이미 친구들이 앉아 있어 중간 쪽 자리를 잡았으나 B학생은 “앞에 자리가 있는데 “왜? 여기에 앉아 있어 XXX아”라고 욕했다. 특히 B학생은 기숙사 방을 같이 사용할 당시 주로 방청소, 빨래, 쓰레기 버리기, 라면 끓이기 등 모든 일들을 시켰다. B학생은 A학생이 보이지 않으면 기숙사를 돌아다니며 찾아 나섰고 방으로 데려와 온갖 잡일을 시켜댔다. 하루는 몸이 너무 많이 아파 치료를 받느라 일요일에 기숙사 입실을 못했던 때도 있었다. 치료를 받고 며칠 뒤 기숙사에 갔을 때도 평소와 같이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B학생은 A학생을 보자마자 빨래하라고 시켰다. (-중략-) 청소시간이라는 방송이 나오면 B학생은 A학생을 소리쳐 부르며 찾아다녔고 A학생을 데려가 청소를 시켰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해당 기사에서 ‘B학생’으로 표기된 학생이 ‘A학생’으로 표기된 학생에게 2년여 간 욕을 하거나 폭행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등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4〉

가. 제목 : 「[아버지의 눈물④]학부모에게 동의서 ‘중용’ … 학교 규정도 ‘손봐’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6월 20일자 사회면에 「[아버지의 눈물④]학부모에게 동의서 ‘중용’ … 학교 규정도 ‘손봐’」이라는 제목으로 【그러나 최근 B학생이 A학생을 괴롭히고 욕설을 해왔던 사실과 B학생의 음주, 흡연, 휴대폰 소지 및 사용 등의 사실을 들어 학부모의 학교폭력위원회 개최가 잇따라 요구됐고 본보가 이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자 학교 측이 B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B학생은 친구들과 사이에서 체험학습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잦았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 학교의 경우 2학기 동안 체험학습은 7일로 알려져 있으며, ○○고는 19일이었다. 그런데 이를 두 배로

늘린 것이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확인한 결과, 해당 기사에서 ‘B학생’으로 표기된 학생이 흡연한 사실은 없고, ‘B학생’의 체험학습이 다른 학생들보다 갖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9. 2.(금) 18:00까지 아래의 기사들을 전부 삭제하고,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 ○ 삭제 대상 기사

- 1) <아시아경제닷컴> 2016. 4. 5.자, 뉴스)사회면, 「“수행평가 교사 입맛대로 차별 적용” 대학입시 비리 논란」 제하의 기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40510020705755>

- 2) <아시아경제닷컴> 2016. 5. 17.자, 뉴스)사회면, 「상습적으로 학우 괴롭힌 학생회장에게 ‘교육감 표창’이라니」 제하의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1718180781808>

- 3) <아시아경제닷컴> 2016. 5. 25.자, 뉴스)사회면, 「수행평가 특혜’ 주장했더니 성적이 올랐어요」 제하의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2417135122145>

- 4) <아시아경제닷컴> 2016. 5. 25.자, 뉴스)사회면, 「학교 기숙사서 2년 간 학교폭력 발생 드러나 ‘충격’」 제하의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2509380345736>

- 5) <아시아경제닷컴> 2016. 5. 26.자, 뉴스)사회면, 「전남도교육청 “○○고에 학폭위원회 개최” 명령」 제하의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2615105679951>

- 6) <아시아경제닷컴> 2016. 6. 20.자, 뉴스>사회면, 「[아버지의 눈물①]무조건 이해하고  
인내하라...“딸에게 미안하다” 눈물」 제하의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2011105681710>
- 7) <아시아경제닷컴> 2016. 6. 20.자, 뉴스>사회면, 「[아버지의 눈물②]학교폭력 피해  
숨기고 가슴앓이 해 온 피해 학생의 사연」 제하의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2011103576761>
- 8) <아시아경제닷컴> 2016. 6. 20.자, 뉴스>사회면, 「[아버지의 눈물③]○○고, 학교폭력  
수수방관 ... 전남교육청은 ‘뒷집」 제하의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2011101563853>
- 9) <아시아경제닷컴> 2016. 6. 20.자, 뉴스>사회면, 「[아버지의 눈물④]학부모에게 동의서  
‘종용’ ... 학교 규정도 ‘손봐」 제하의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2010445108840>
- 10) <아시아경제닷컴> 2016. 6. 22.자, 뉴스>사회면, 「“학교폭력 방치에 절규하는 부모의  
‘한’ 풀어주세요”」 제하의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2215215294048>
- 11) <아시아경제닷컴> 2016. 7. 6.자, 뉴스>사회면, 「학교폭력은 통상적인 것 ... ‘죄는  
있어도 처벌 없다?」 제하의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70610022359432>
2. 피신청인은 향후 유사한 보도를 하더라도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한다.
3.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의 조정대상 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8. 26.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조정대상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 ▶ 사례19

신청인이 지하철에 앉아 출근하고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6서울조정1254 손배청구
신 청 인	장 ○
피 신 청 인	네이버 주식회사 (네이버)
중 재 부	서울 제2중재부
접 수 일	2016. 9. 2.
처 리 결 과	취하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서울 지하철 9호선에 셔틀형 급행열차가 투입된 첫날의 상황을 보도한 조정대상기사를 포털사이트에 매개하였고, 기사제공언론사는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 및 객차 내부에 앉아있는 승객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해 게재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진 촬영 및 보도에 동의한 적이 없고, 조정대상기사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에 많이 본 기사로 뜨면서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신청인을 비난하는 모욕적인 댓글이 수 백개 달려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은 내규에 따라 일부 댓글은 자체 조치를 취했고, 그 외 댓글에 대해서는 신청인 요청에 따라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후 신청인이 명예 훼손적인 댓글을 특정하여 피신청인에게 전달하기로 정하였다. 중재부는 삭제 여부 확인이 필요하므로 임시조치 기간(30일) 이후로 심리를 속행할 것을 결정하였고, 신청인이 요청한 댓글들 중 임시조치 후 게시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종국적으로 노출 및 검색차단 조치되었으며, 이를 확인한 신청인이 2차 기일 전에 사건을 취하하였다.

## 조정대상보도

- 네이버 - 『“앉아서 출근하다니” ... ‘천국鐵’된 9호선』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31일자 뉴스면)

## ■ 내 용



× “앉아서 출근하... :: 네이버 뉴스  
m.news.naver.com

사진 가운데 정장입고 찍벌. 저런것들이 사라져야 더 쾌적한 지하철이된다.  
2시간 전 신고

답글 156    3038    274

L [redacted]  
남자가 봐도 너무하다 옆사람이 찍벌남때문에 움츠리잖아...  
2시간 전 신고

L [redacted]  
대박 일부러 옆에 여자들하고 밀착하려고 벌린듯 진짜 극혐  
2시간 전 신고

L [redacted]  
얼마벌린거같지도않구만..  
2시간 전 신고

L [redacted]  
진짜 개극혐 개공감 ㅋㅋㅋ  
2시간 전 신고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처리결과

취하

### 취하 후 이행결과

모욕성 댓글 임시조치 후 검색 및 노출 차단

## ▶ 사례20

탈북여성 중매업체에 근무하는 신청인의 사진 및 사생활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6서울조정1108 손해청구
신 청 인	최○○
피 신 청 인	한국방송공사 (KBS-1TV)
중 재 부	서울 제3중재부
접 수 일	2016. 8. 3.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손해배상)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이 탈북여성 중매업체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는 신청인과 교제했던 남성의 인터뷰를 게재했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사진과 사적인 남녀 관계가 동의 없이 공개됐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방송 보도에 동의한 바 없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확인도 없이 제보자의 의견만을 편파적으로 보도해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현재 해당 업체로부터 권고 사직을 당하였다며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이 근무했던 결혼정보업체에 사실조회를 통해 조정대상보도 이후 회사 이미지 실추 및 회원들의 항의로 사직을 권고한 점을 확인하였고, 신청인의 피해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신청인 사진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하고, 손해배상금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KBS-1TV -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남남북녀는 없다, 탈북여성 중매업체』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22일자)

#### ■ 내 용

- ▷ 김창희(가명) : 네 번째 만날 때 (여자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남북결혼 중개업체에서 일한다. 다른 회사 커플매니저한테 요청이 온대요. (자기업체 남성회원을) 만나달라고요. 그것은 남자회원의 만남횟수가 빨리 지나가야 하니까 (요청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3번이건 6번이건 남자회원의 만남 횟수가 빨리 지나야 한 회원의 계약이 끝나고 다른 회원이 들어오니까 횟수 없애려고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진 공개)

저를 만나면서도 다른 남자회원을 만나더라고요. 제가 ‘만나지마라’ 이야기했죠. 내가 있으니까 이런 일(남자 만나는 일)은 하지 말라고 (여자도) 제가 그런 걸 싫어하니까 안 한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는 하는데 끝까지 회사를 다녔고 저한테는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 ▷ M C : 그 여인은 왜 김 씨와의 교제 중에도 다른 남성과의 맞선 자리에 나갔을까.
- ▷ 취재진 : 혹시 ○○○ 매니저님 계시나요? ○○○씨요.
- ▷ 결혼중개업체 대표 : 솔직히 그 여성분은 피해자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게 아름다운 만남을 했으면 아름답게 끝나는 게 인간이 아니겠냐.
- ▷ 결혼중개업체 직원 : 아니 근데 회사 직원들도 다 미혼인데 괜찮은 분 있으면 만날 수 있는 거고 그게 왜 이렇게 찾아오실 정도로 문제가 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 ▷ M C : 취재결과 관계 업체 직원끼리 서로 돌아가며 맞선자리를 채워나가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은 2016년 9월 9일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2016년 9월 12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홈페이지의 다시보기(VOD) 서비스 및 피신청인의 기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신청인 부분을 모두 삭제하도록 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2016년 9월 12일까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및 종합유선방송(CATV)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VOD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각 방송사업자에게도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VOD 서비스에서 신청인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신청인 관련 조정대상보도가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제1항 ~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제1항 ~ 제2항을 이행한 경우,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9. 2.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KBS미디어 - 다시보기(VOD) 서비스에서 신청인 관련 부분 삭제하여 수정
- 손해배상금 1,000,000원 지급

## ▶ 사례21

신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한 흥기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음식점 내부가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6서울조정8, 2016서울조정9(병합) 각 손배청구
신 청 인	임○○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채널에이 (채널A, 인터넷 채널A)
중 재 부	서울 제6중재부
접 수 일	2016. 1. 7.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손해배상)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흥기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음식점의 CCTV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건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제공하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입구가 그대로 노출되어 매출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4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CCTV 영상을 선의로 제공하면서 음식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미흡하여 주변 사람들이 알아 볼 수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피신청인이 유감표명과 함께 조정대상보도 노출 및 검색 차단을 수용한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액 2,000,000원을 권유하였으며,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채널A - 굿모닝A 프로그램 『술 마시다 흥기 난동 ... 2명 부상』 제하의 각 기사 (2015년 10월 26일자 사회면, 인터넷 채널A 10월 26일자 뉴스면)
- 내 용
  - ▷ 진행자 : 어제 저녁 서울 도봉구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흥기를 휘둘러 두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도주했지만 곧 경찰에 붙잡혔고, 흥기에 찢린 남성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 ▷ 기 자 : 밤 늦은 시각, 길거리에서 마주보고 선 두 남성.  
실랑이를 벌이던 남성 한 명이 옷을 벗는가 싶더니 갑자기 복부를 움켜쥐고 쓰러집니다.  
마주보고 있던 A씨가 미리 가지고 있던 흥기를 휘두른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 인근 상인 : “둘 다 술에 취했었나봐. ‘그래 찢러봐, 찢러봐’ 하니까 진짜로 찢렸대”
- ▷ 기 자 : 그런데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흥기에 찢린 남성이 쓰러진 사이 피해 남성의 일행인 50대 남성에게도 흥기를 휘두른 것입니다.
- ▷ 인근 상인 : “흥기로 그 사람이 찌르고 도망을 갔는데, 한 사람이 흥기에 찢려서 (복부를) 쥐고 잡으러 갔고”
- ▷ 기 자 : A씨가 휘두른 흥기에 부상을 당한 두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뒤 달아났던 A씨도 사건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6년 2월 12일까지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2016년 2월 5일 10:00까지 채널A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channela.com/>)에 게시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동영상을 삭제하고,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은 2016년 2월 12일 10:00까지 피신청인 대리인 임○○ 차장 명의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의 문서를 신청인 또는 신청인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5. 피신청인이 위 제3항 또는 제4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위 각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6.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보도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2. 3.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조정대상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 피신청인 유감표명

## ▶ 사례22

부산시립도서관 옹벽 리모델링 사업자로 선정된 회사의 옹벽 디자인이 표절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6부산조정1·2, 2016부산조정3·4(병합) 각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주식회사 ○○○○○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국제신문사 (국제신문, 인터넷 국제신문)
중 재 부	부산중재부
접 수 일	2016. 1. 12.
처 리 결 과	각 취하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부산시립도서관 옹벽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저작권 논란이 있다고 보도 하면서 부산시립도서관 옹벽 디자인과 모 중학교 담장 공모에 제출된 디자인 도안을 각각 게재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보도의 모 중학교 담장 공모 디자인은 부산시립도서관 옹벽 리모델링 공모에 제출한 신청인의 주간 시뮬레이션 도안으로서, 결국 보도의 도안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간 및 야간 시뮬레이션으로 동일한 것임에도, 마치 다른 업체가 다른 공모에 제출했던 도안인 것처럼 비교함으로써 신청인이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오인하도록 보도하였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이에 피신청인이 사진을 잘못 게재한 점을 인정하고, 심리 전 조정대상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후 신청인이 이 사건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 조정대상보도

- 국제신문 - 『시립도서관 옹벽 리모델링, 디자인 표절 논란에 표류』 제하의 각 기사 (2015년 9월 15일자 사회면, 인터넷 국제신문 9월 15일자 사회면)

## ■ 내 용



부산시립도서관 옹벽 디자인(위)과 경북 모 중학교 담장 공모에 제출된 디자인.

부산 부산진구가 추진하는 부산시립도서관 옹벽 리모델링 사업이 ‘저작권 논란’으로 표류하고 있다. 부산진구는 최근 사업을 맡았던 업체에서 사업 포기 의향을 밝혔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표명했지만, 앞으로 관 주도 사업에서 표절 등 잡음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의 한 설계업체 A사는 자사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부산시립도서관 옹벽 디자인 사업을 따낸 B사를 검찰에 형사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사의 주장에 따르면 B사가 지난 5월 부산진구의 공무를 통해 따낸 시립도서관 옹벽 디자인은 A사가 2012년 경북의 한 중·고등학교 담장 디자인 사업에 공모했던 디자인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두 회사의 디자인을 본 사람들은 표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DNA 구조를 형상화해 원이 휘감겨 있는 타일의 형태와 ‘예술적 가치’, ‘환경 친화력’ 등의 문구 등 B사의 옹벽 디자인은 A사가 2012년 제작한 디자인과 유사점이 많다.

A사 관계자는 “누구나 한 눈에 알 수 있는 ‘표절’”이라며 “남의 디자인으로 공모에 참여하면서 B사는 일체의 합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두 회사의 작품을 본 디자인 전문가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아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표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B사는 원래 A사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퇴하 이후 만든 회사로 알려졌다.

부산진구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절 논란이 불거진 작품은 공모에 함께 나온 작품도 아니고, 다른 공모에서 선정된 작품도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5명 내외의 심사위원회가 전국 지자체의 공모를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표절 여부를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립도서관 옹벽 사업은 애초 예상했던 9월 내 완공이 불가능하게 됐다. 새로운 업체에 공사 발주를 넣는다고 해도, 완공에는 120일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완성된 타일을 이용해 공사하는 데만 한 달이 넘을 것으로 부산진구는 추정하고 있다. 사업이 올해 안에 진행되지 않으면, 부산시에서 받은 사업비 3억 3000만 원은 시로 환수당한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올해 안에 발주를 넣으면 사업비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국제신문 사회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부산진구 새 업체에 연내 발주 제도적 검증장치 마련 지적”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인터넷 국제신문(<http://www.kookje.co.kr/>)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가. 제목 : ‘시립도서관 옹벽 리모델링, 디자인 표절 논란에 표류’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 신문 9월 15일자 10면 [시립도서관 옹벽 리모델링 디자인 표절논란에 표류]란 제목의 기사와 함께 게재된 기사의 사진(위, 아래)은 진구청에 응모한 B사의 주간, 야간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부산시립도서관 옹벽 디자인(위)과 경북 모 중학교 담장 공모에 제출된 디자인’이라고 사진 설명을 달아 누가 봐도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내용으로 인식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A사 관계자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다소 독자로부터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사건처리결과

취하

### 취하 후 이행결과

조정대상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 제6장 기타 사례





## 제6장 기타 - 후속보도 사례

### ▶ 사례23

강남에 소재한 한 여행사의 부도 소식을 보도하면서 “강남 여행사”로 칭하여 동일 상호의 여행사에 피해를 입혔다.

사 건	2016서울조정189·190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여행사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와이티엔 (YTN)
중 재 부	서울 제3중재부
접 수 일	2016. 2. 15.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PR·후속보도)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강남에 소재한 한 여행사가 부도를 내 신혼부부 수십 쌍이 여행경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강남지역의 한 여행사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부도난 여행사와 혼동하도록 하였고, 고객들로부터 계약 취소 및 환불요청을 받는 등 영업상의 손해가 있다며 정정보도 및 6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가 인터넷으로 확산되는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보도의 부도난 여행사와 신청인 회사는 무관하다는 점을 알리는 후속보도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통해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YTN - 종합뉴스 프로그램 『서울 강남 여행사 부도 ... 신혼부부 피해 속출』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6일자)

## ■ 내 용

신혼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가 부도를 내고 신혼부부 수십 쌍의 여행비를 돈을 돌려주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의 모 여행사 대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웨딩 업체와 연계해 고객을 유치한 해당 여행사가 지난 4일 부도처리 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신혼부부 60여 쌍, 1억 5천여만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낸 데 이어 검찰에도 업체 대표를 고소할 예정입니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YTN-TV 종합뉴스 프로그램에서 통상적인 속도로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글꼴의 크기로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해 주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여행사” 부도 또는 “서울 강남여행사의 부도”는 “○○여행사 부도”가 아니고 강남지역 소재의 “A”여행사로 밝혀져(또는 “오류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방송은 2015. 12. 16.과 2016. 1. 12. 아침 종합뉴스방송에서 (서울) 강남여행사 부도 및 회사대표의 도피, 잠적 등의 “강남여행사 부도”라는 자막의 하단표기와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부도 여행사와는 전혀 무관한 “(주)○○여행사” 명칭을 가진 여행업체가 있었고 지난 보도는 강남지역에 소재한 A여행사로서, 더 이상 ○○여행사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개월의 영업손실금, 신청인의 명예훼손과 신용추락,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신청인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 1. 보도문

가. 제목 : ‘강남 여행사 부도’ 단독 기사 관련 안내문

나. 본문 : 지난 2015년 12월 16일자 「서울 강남 여행사 부도 ... 신혼부부 피해 속출」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부도가 났다고 보도된 여행사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회사로 동대문구에 있는 주식회사 ○○여행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인터넷 YTN(<http://www.ytn.co.kr>) 홈페이지에 제1항의 보도문을 2016년 3월 23일 09:00부터 팝업창으로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은 인터넷 YTN 홈페이지의 통상적인 기사 제목 및 내용과 같은 크기의 글씨체로 쓰며, 팝업창의 크기는 800×600으로 하고, 각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네이버에 아웃링크한 기사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이 위 제1~3항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피신청인이 위 제2항 및 제3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5. 피신청인이 위 제2~4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인터넷 YTN - 『‘강남 여행사 부도’ 단독 기사 관련 안내문』 제하의 공지  
(2015년 1월 30일자 초기화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제6장 기타 – 기각결정 사례

### ▶ 사례24

구청의 시정을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은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

사 건	2016서울조정791·792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어○○
피 신 청 인	이데일리 주식회사 (인터넷 이데일리)
중 재 부	서울 제4중재부
접 수 일	2016. 5. 31.
처 리 결 과	기각결정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강남구가 세곡동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대상 현안보고회를 개최할 예정 이고, 이에 대해 세곡동 주민단체인 ○○○○주민연합이 생색내기용 행사라고 비판한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세곡동 주민인 신청인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주민연합의 의견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중재부는 조정대상기사에 신청인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고, ○○○○주민연합의 의견을 게재한 것만으로 지역주민인 신청인을 보도로 인한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에 대해 기각결정 하였다.

#### 조정대상보도

- 인터넷 이데일리 - 『강남구 ‘현안 산적’ 세곡동 주민과 대화 ... 효과는 미지수』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4일자 사회면)
- 내 용  
서울 강남구가 학교·교통·문화 등 기반시설 부족 등 산적한 세곡동 현안문제를 풀기 위해 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선다.

강남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세곡동 주민 대상 현안보고회를 4회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세곡동은 기존 8개 전원마을로 구성된 인구 약 5000명의 도심 속 농촌지역이었으나 지난해 보금자리 1, 2지구가 준공되면서 인구 5만명에 육박하는 인구밀집 지역으로 탈바꿈됐다. 하지만 학교, 도서관, 교통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강남구는 이번 보고회에 주요부서 간부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바로 해소하는 ‘즉문&즉답’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안건은 △세곡지구 교통여건 개선 △세곡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강남보금자리 지구내 도서관 건립 등이다.

특히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밤고개로 확장, 대모산터널 건설, 위례~신사선 지선 신설, 동서철도 노선 경유 등 중·장기적인 교통대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안보고회의 실효성이다.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세곡동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이다.

세곡동 복합문화센터나 도서관 건립 등은 구가 갖고 있는 토지를 활용해 가능하지만 더욱 본질적인 교통과 교육 문제는 강남구가 풀 수 있는 게 없다.

강남구도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요구를 얼마나 관철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게다가 강남구 세곡동장이 세곡동 주민단체인 ○○○○주민연합이 배포한 전단지들 수거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주민들과의 신뢰가 깨져 있는 상태여서 실제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옥○○ 강남구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추진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행정에 반영해 살기 좋은 세곡동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주민연합 대외협력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강남구가 관변 단체 등을 동원해 개최하는 생색내기용 행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사실관계가 없는 내용을 삭제 후 아래의 보도문을 게재한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 가. 제목 : ○○주민연합의 실체를 밝히길 바란다.
- 나. 본문 : ○○○○주민연합이라는 단체명을 기재하였는데 ○○○○주민연합이 무슨 단체인지 알 수 없으며, 세곡 주민을 위한 활동보다는 “국민행복주택”을 반대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임. 세곡동 주민으로서 인정한 적도 없고 어느 직능단체도 인정한 적이 없고 관공서에서도 인정한 적이 없는 단체의 주장을 쓰고 그 단체의 주장과 사건이 확정된 것이 없음에도 게재하여 세곡동 주민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사건처리결과

기각결정

## 기각결정서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이유

## 1. 기초사실 및 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강남구청이 세곡동 현안문제를 풀기 위해 세곡동 주민 대상 현안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나 그 효과는 미지수”라고 보도하였다.
- 나. 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강남구청의 행정을 비판하는 ○○○○주민연합이라는 유명 단체의 의견을 보도해 세곡동 주민인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정정보도 및 반론 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 2. 판단

- 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피해자)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해당 보도에 지명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 인격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자를 말한다.

나.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는 신청인을 직접 지명하여 언급한 바가 없고,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보더라도 해당 보도 중 신청인을 지목한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보도와 신청인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된다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은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에 명시된 ‘피해를 입은 자(피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6. 13.

## 제6장 기타 – 조정불성립결정 사례

### ▶ 사례25

사드(THAAD) 도입으로 우리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배치 지역은 전자파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는 만평은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6서울조정1246 정정청구
신 청 인	국방부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통일뉴스 (통일뉴스)
중 재 부	서울 제7중재부
접 수 일	2016. 9. 1.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만평을 통해 사드 도입 및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 효용성이 낮고 세계 최초로 민가를 앞에 두고 배치해 전자파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드 배치비용 및 운영·유지비는 모두 미국에서 부담하고, 우리 정부가 구입할 계획이 없으며, 미군은 미 육군 교범에 있는 ‘비통제 인원 출입제한구역’ 도식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였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는 이미 타 언론사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풍자와 은유’를 통한 만화 비평으로 재구성한 것으로서 정정보도할 의향은 없으나, 반론보도는 게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반면, 신청인은 반론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당사자 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조정이 불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통일뉴스 - 『사드 배치의 진실』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2일자 그림만평면)

■ 내 용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기사 순서 상위 5번째 이내로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시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 활자체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각각 같게 한다.

또한, 조정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조정대상기사 본문 바로 아래에 이어서 게재하여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 활자체는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각각 같게 한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사드 배치의 진실’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2016년 8월 2일 그림 만평에 ‘사드 배치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도입과 관련하여 국민투표가 필요하고, 포대 배치 및 운영유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할 수 있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이 아닌 중·러 감시용이며, 포대 배치 지역의 거주민에게 전자파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위 보도내용은 한미 국방부가 도입키로 한 사드(THAAD)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잘못 보도하였기에 바로잡습니다.

통일뉴스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주한미군과 국방부 측에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잘못된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한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조정불성립 결정서****주문**

이 사건 조정은 불성립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조정신청은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9. 28.